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국가청소년위원회

발행일 2007년 12월

발행인 정정희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후 원 국가청소년위원회

만든이 권김현영, 이어진, 이진영, 이향심, 정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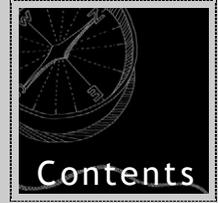
별 책 보리, 붕붕, 이루다, 카시아

삽 화 탄똥_hadisa22@empal.com

디자인 nina's eye (02-2604-0139)

*본 책자의 저작권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에 있습니다.

*본 책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책을 열며 :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의 필요성 | 7

I. 친족성폭력에 대한 이해 | 13

1. 친족성폭력의 개념 | 15
2. 친족성폭력의 범위 | 16
3. 친족성폭력의 실태 및 특성 | 18

II. 친족성폭력 상담의 준비 | 21

1. 상담자의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 | 23
2. 상담자가 점검해야 할 몇 가지 원칙 | 41
3.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초기 상담 체크리스트 | 48
4. 친족성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 | 49

III.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의 심리상담 | 53

1. 심리상담 | 55
2.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이 나타내는 문제들 | 60
3. 전반적인 심리상담 과정 | 69

IV.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백서 | 87

1. 쉼터지원 | 89
2. 학교지원 | 91
3. 의료지원 | 96
4. 법적지원 | 99
5. 퇴소 및 연계지원 | 107

나머지 이야기와 부록 | 113

- 지원을 위한 연계망 | 119
- 학교장추천서 양식 | 129

| 서 문 |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을 지원하는 쉼터실무자를 위한 매뉴얼을 발간하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 정정희

친족성폭력피해 - 아주 특별한 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친족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의 대부분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입니다. 자신의 성폭력피해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피해청소년들은 가해자를 피해 가출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족성폭력때문에 가출한 청소년들은 가정이 아닌 안전한 쉼터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가출청소년들과 처음 만나는 쉼터 활동가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쉼터 입소 초기에 청소년 개인마다 필요한 다양한 지원들이 적절하게 이뤄진다면 청소년들은 자신 안에 숨어있는 힘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가출을 반복하면서 쉼터를 전전하는 악순환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터의 활동가들이 친족성폭력에 대한 정보, 이해의 부족 혹은 친족성폭력피해청소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입소 초기지원에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쉼터가 성폭력피해전문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단기시설이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단기청소년시설의 보호기간인 3-6개월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를 상담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것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일상생활을 시작하기에 아주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 열림터는 일반 성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이지만, 개소 이래 입소자 대부분이 친족성폭력피해 청소년들이었습니다. 14년 열림터 활동 중 입소 초기 피해청소년들을 지원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참고하고 성폭력전문상담가와 심리치료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성폭력피해보호시설 뿐 아니라 일반청소년 쉼터에서도 친족성폭력피해청소년들을 위한 입소초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세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을 이 책자에 담았습니다.

모든 청소년 쉼터의 활동가분들께 이 책의 내용과 진심이 전달되어 친족성폭력피해청소년들의 지원에 바른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2월

매뉴얼 활용을 위한 착한 안내



본 매뉴얼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친족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초기 개입의 필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하기보다 연계가 가장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지원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부는 친족의 범위와 친족성폭력의 뜻과 특징 등을 살피며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장입니다. 친족성폭력의 특징 등을 알고 상담을 시작한다면, 다음 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부는 상담에 앞서 갖춰야 하는 준비물 주머니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친족성폭력 사건을 상담하게 될 때 어떤 것이 청소년을 위한 것일까 상담자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상담자가 가질 수 있는 갈등과 긴장에 대해 풀어가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부에 있는 <초기상담! 체크리스트>는 초기 상담 과정에서 반드시 살펴야 할 항목과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을 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초기에 반드시 파악되어야 할 내용을 살피고, 이후 지원 방향과 연계망 등을 고민할 수 있는 전체 지도를 그려 볼 수 있습니다.

4부는 심리전문가를 통해,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들의 심리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걸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청소년들을 만나야 할 때,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5부는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에 대해 전체 지도를 그려보고 각각 세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심터/학교/의료/법률/퇴소 지원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자세한 실례를 통해 과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팁>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책의 **별책인** <내 이름은 __, 내 이야기 한 번 들어 볼래?>라는 이름의 공책은 재미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들이 한 발 먼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살았던 친구들의 메시지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을 통해, 편안하게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도 자료의 활용을 통해 피해 청소년과의 편안한 만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열며

“ 하나 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전체를 조망하며 연계를 결정하고
지원하는 작업은 어렵습니다.
응급실의 긴박함까지는 아니겠지만,
초기 피해 상담을 하는 것이 주는
긴장감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응급실의 조치가 생명에
중요한 기점이 되듯,
피해 사실에 대해 초기 인지한 기관의
적절한 개입도 청소년의 삶과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정복귀와 사회적응을 넘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의 필요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생활 청소년 중 친족성폭력피해...85.7%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2006년 상담통계)

가출사유 - 부모의 학대/폭력...37.5%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가출청소년쉼터 실태조사, 2005)

한국성폭력상담소 전체 상담 중 친족성폭력...15.5%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년 상담통계)

청소년대상 성범죄 친족 가해자...6.7%

(국가청소년위원회 제12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통계자료)

우리는 본 매뉴얼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청소년 쉼터의 구조와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터뷰 과정에서 만났던 쉼터 실무자들의 목소리는 현장에서의 답답함과 문제의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하였습니다.

우리 시설에는
그런 애들 없어요

시설의 특성상 우리 시설에서
친족성폭력을 따로 지원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어설픈게 건드리는 것 보다,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쉼터에 온 청소년 가운데 친족성폭력피해가 있는 경우는 소수이며, 시설의 특성상 이 문제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리라는 의견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개입이 어렵기에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최선의 지원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 가운데 친족성폭력피해가 가출이나 생활에 미친 영향을 잡을 수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청소년쉼터 협의회에서 조사한 가출청소년 쉼터 실태조사 가운데, 가출 사유의 37.5%가 부모의 학대와 폭력임을 볼 때 가족 안에서의 폭력은 가출의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경우 친족성폭력피해가 85.7%인 것을 통해 성폭력피해자 가운데 가족에 의한 피해는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아 쉼터에서 지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성폭력의 특성상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친족성폭력피해가 있었다라도 집을 나오면서 피해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에 위기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쉽게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단기간” 머무르는 시설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백만가지 지원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단기간’ 안에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친족성폭력피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출의 원인이 가족 내 폭력에 있을 때, 이에 대해 피해 청소년들이 보일 수 있는 태도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내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청소년이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은 피해를 반복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재가출을 초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장기 시설로 연계 되는 경우에도, 가해자와의 완전한 분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호적법의 특성상 가족관계에 있다면 개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청소년들이 초기에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만나고 적응하는 것은 어쩌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열림티>의 경우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의 초기 지원은 대개 1개월 안에 이루어 집니다.

“전문적”인 지원은 초기의 적절한 개입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피해청소년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 쉼터에서 이뤄지는 응급조치는 이후 전문적 지원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계”를 결정하는 많은 통로가 있습니다. 친족성폭력으로 인해 가출한 경우 대부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장기간 시설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전국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15개 (장애인시설2개 포함)입니다. 현실적으로 전문 기관으로의 ‘연계’만을 기다리기 어렵고, 사건의 특성상 연계를 위해 기다리는 기간에 중요하게 파악되어야 할 것들을 놓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전체를 조망하며 연계를 결정하고 지원하는 작업은 어렵습니다. 응급실의 긴박함까지는 아니겠지만, 초기 피해 상담을 하는 것이 주는 긴장감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응급실의 조치가 생명에 중요한 기점이 되 듯, 피해 사실에 대해 초기 인지한 기관의 적절한 개입도 청소년의 삶과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의 초기 개입은 가정복귀와 사회적응을 넘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I. 친족성폭력에 대한 이해

1. 친족성폭력의 개념
2. 친족성폭력의 범위
3. 친족성폭력의 실태 및 특성

1. 친족성폭력의 개념

성이 개인과 사회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듯이 성·성폭력·친족성폭력의 개념 또한 사회의 제도적, 규범적 변화 속에서 함께 변화해왔습니다.

※ 성폭력은 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의 범위를 성을 매개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일련의 강제 및 통제 행위로,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무형·유형의 강제력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몸과 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욕망·욕구 등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하는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근친상간이 아닌 근친강간입니다.

친족 간의 성행동 또한 다양한 언어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가족을 포함한 결혼이 금지된 친인척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행동을 '근친상간(近親相姦)'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응집을 강화하고 환경적응을 높이기 위한 이유 등으로 인류의 범문화적인 금기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간(相姦)'이란 용어는 폭력성이나 강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친상간 대상(피해자)의 95%가 미성년자와 여성이라는 점과 가해자의 80%는 가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성인 남성이라는 점에서 근친상간이 가족 내 힘과 권위를 이용한 통제 수단으로서의 폭력임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 힘은 피해자를 순종하도록 다룰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인 성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의 사회적·개인적 의미를 잘 모르는 반면, 가해자는 성관계의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힘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성관계를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로 볼 수 없습니다.

즉 근친상간이 흔히 혼인이 금지된 성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관계로 규정됨으로써, 친족성폭력피해자의 다수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간과되고, '성폭력'의 본질을 희석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 친족성폭력이 현재의 법적 용어입니다.

따라서 1990년대 들어 여성인권운동단체에서는 강제적이며 폭력적이라는 의미를 담아 '근친강간(近親強姦)'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근친강간은 과도기적 용어로만 사용되었으며, 여러 유형의 성폭력을 내포하지 못한다고 하여 '친족성폭력'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시도되었습니다. 이 시도는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과 때를 같이 하면서 법적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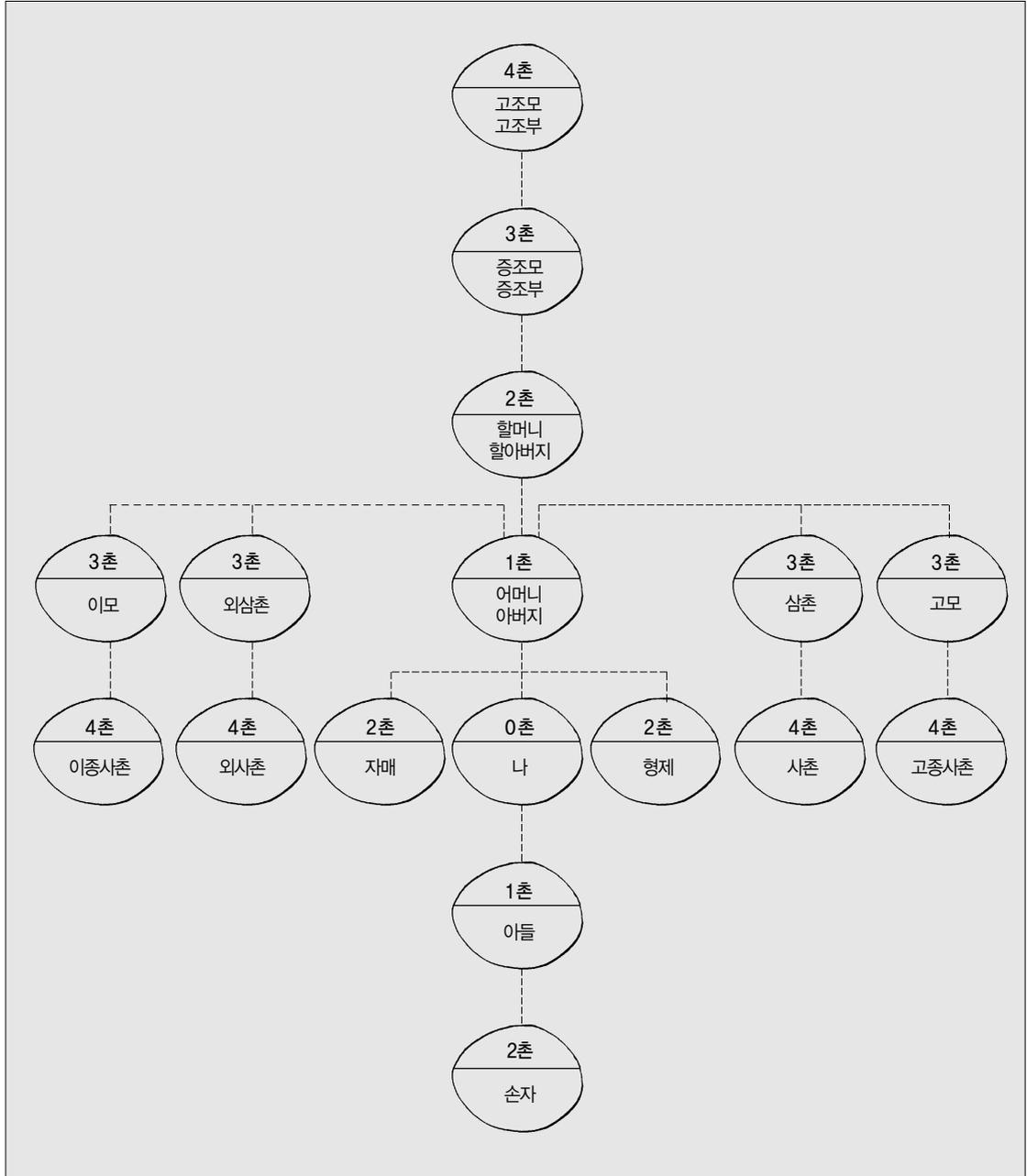
즉 친족성폭력은 성폭력특별법 제 7조, 15조, 18조에 의거하여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인 자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행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2. 친족성폭력의 범위

- 4촌이내 혈족 1촌 - 친부모, 의부모(사실혼 관계도 포함)
 2촌 - 친형제, 친자매, 조부모
 3촌 - 이모, 외삼촌, 백숙부, 고모, 증조부모
 4촌 - 이종, 외사촌, 중형제, 고종, 고조부모

- 2촌이내 인척 형부, 제부, 의형제

〈그림 1〉 친족성폭력의 범위



3. 친족성폭력의 실태 및 특성

우리나라에서 친족성폭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고소율이 1990년에 2.2%, 1996년에 6%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10%대 미만이며, 성폭력 신고율 자체가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확한 실태 파악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따라서 본격적인 연구와 통계자료 자체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신고율이 아닌 좀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실태 파악에 접근할 필요를 제시합니다.

본 매뉴얼에서는 사회적, 법적 판단에 따른 통계나 피해 기준은 성폭력피해 자체를 누락시키는 것이 많다는 점에서 보다 '피해자 본인의 고통'에 의거하여 상담소에 들어온 상담을 중심으로 피해 유형을 분류합니다. 즉 신고를 하기 어렵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에서 피해를 인지하는 경우와 장기적인 후유증과 같은 친족성폭력피해의 특징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상담소 중 성폭력피해자지원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지원 케이스가 많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에 근거하여 친족성폭력의 실태와 특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 8,669건 중 친족성폭력 797건(9.2%)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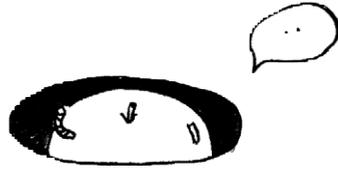
첫째 '아버지'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친족성폭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근친이 435건으로 54.6%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친부에 의한 피해가 249건인 31.3%로 가장 높습니다. 사실상 관계를 고려하여 의무 66건(8.3%)을 포함하면 아버지의 역할을 가지는 자에 의한 피해가 39.6%로 가장 높습니다.

둘째 피해가 지속적입니다.

친족성폭력피해는 대부분 유아, 아동기 때(55.2%) 시작되어 생리 시작으로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성교육으로 피해인지가 가능한 청소년기 및 성인기까지 지속됩니다. 친족성폭력피해자들의 49%가 한 번 이상의 지속적인 피해를 경험했으며, 이러한 지속피해 중 피해횟수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83.3%를 차지했습니다. 앞에서 얘기 된 것처럼 친족성폭력은 어른의 권위를 이용하여 대부분 유아, 어린이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로 인지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갖는 높은 신뢰와 친밀감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더욱 커 지속적인 피해에 계속 노출 될 위험이 높습니다.





첫째 외부로 노출되기 어렵습니다.

친족성폭력피해 사실을 가족들이 인지한 경우는 308건으로 전체 피해자의 38.6%이지만, 이 중 피해 직후 가족들에게 알려지거나 가족들이 알게 된 경우는 12건으로 1.5%에 불과합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해자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가족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 혼자 참는 것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폭력이 뚜렷한 증거가 남지 않음을 악용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며 비난하여 가해자 외 주변인들로부터 2차피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둘째 고소율이 낮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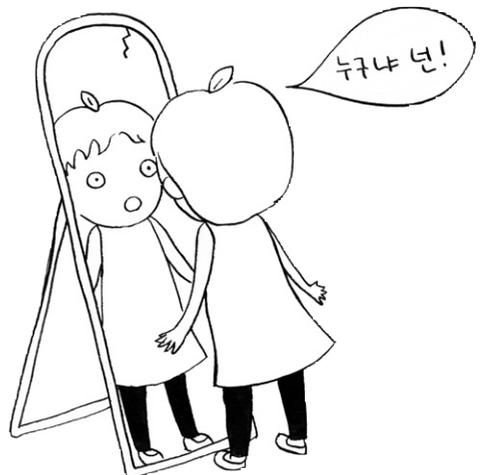
한국성폭력상담소 전체 성폭력상담 고소율은 2001년 14.8%, 2002년 12.7%, 2003년 14.9%로 12%~14%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성폭력의 경우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전체 797건 중 고소를 한 경우는 4.8%에 불과합니다. 가해자이면서도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피해자들은 대부분 양가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고소를 하고 싶지만 다른 가족 성원을 생각해서 참거나 피해자가 가지게 되는 죄책감 때문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실태와 특징에서 살펴본 것처럼 친족성폭력은 피해자 본인이 피해를 말하기(speak out) 자체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이 말하기 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양가감정과 가족 및 사회적 압력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친족성폭력이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악순환을 밟을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Ⅱ. 친족성폭력 상담의 준비

1. 상담자의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
2. 상담자가 점검해야 할 몇 가지 원칙
3.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초기 상담 체크리스트
4. 친족성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



“ 아마도, 지금 이곳에서
청소년을 만나고 있는 나는
그들보다는 나이가 많고,
학력도 높으며,
사회에 대한 경험도 쌓은 나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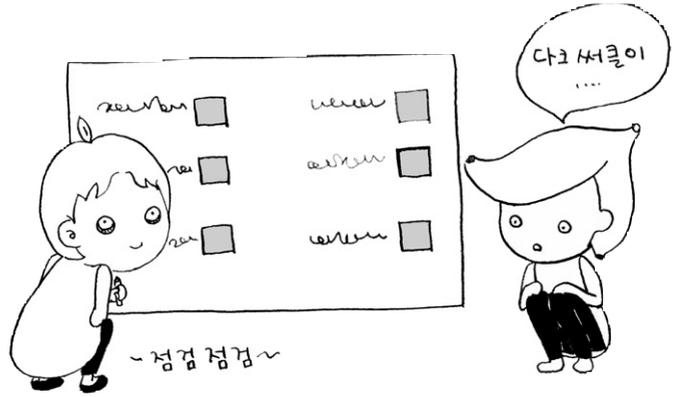
그리고 이곳에 찾아온 청소년의 눈에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지나치게 개입하려고 들면 귀찮은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청소년의 고민을
그들만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닐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경험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 장은
쉼터에 찾아온 청소년 소녀들을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장입니다. ”



1. 상담자의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

'나'에 대한 점검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시간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각 사회마다 중요한 가치가 다르듯이,
다양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는 모두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친구일 것이고,
다른 이에게는 가족이나 애인일 것입니다.
혹은 어떤 이에게는 관계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에 따라
가치관은 계속 변화합니다.

이제 어른이 된 우리도 매일매일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을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에 온 청소년들은 가족, 자퇴 등 가족과 학교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족과 학교는 평화롭지도 않고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은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한국의 청소년들은

유례없이 어려운 사회적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도 다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게 해놓고서는 10대 대상 마케팅은 점점 횡행하고 있는 현상,

20대의 95%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

조건만남과 다방 등 10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상품으로 파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는 현실이 있는 한편
공교육은 붕괴되고, 종신고용신화가 쇠락하면서 많은 부모들이

더 이상 아이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곳에 온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사실 바로 나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놓인 10대들을 만나고 이해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청소년들에게 신뢰와 애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친족성폭력피해와 같이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청소년들은 나를 신뢰하고 애정을 보내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나" 스스로에 대한 점검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잘 써지는 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약간 감상적인 음악

» ...나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의 위치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과 만나고 경험하고 느껴온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먼저 나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나의 조건들을 적어보고, 아래 표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표시해 봅시다.

- ★ 나는 _____ 살이다.
- ★ 나는 사회생활을 한 지 _____ 년 되었다.
- ★ 나에게 가족은 _____ 이다. (예 : 엄마, 아빠, 언니, 남동생 4명이다. 할머니이다. 없는 게 낫다.)
- ★ 나의 택배수신 주소는 _____ 이다. (예 : 집주소, 학교 주소, 길거리, 친구 집...)
- ★ 나는 _____ 이다. (예 : 여자, 남자, 혹은 이 둘에 포함되지 않는 성)
- ★ 나는 _____ 산다. (예 : 혼자, 부모와, 친구와, 남편과, 남편과 아이와, 할머니와, 썬터의 친구들과)
- ★ 나는 _____ 를 나왔다. (예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 학원)
- ★ 나는 _____ 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 (예 : 부모, 친척, 구청, 썬터, 친구, 오직 나 스스로)
- ★ 나는 _____ 를 좋아하며, _____ 와 파트너로서 함께 사는 삶이 인정받기를 원한다. (예 : 이성, 동성)
- ★ 나는 내 외모에 대해 _____ 생각한다.
(예 : 자신감 있게, 자랑스럽게, 부끄럽게, 불만족스럽게, 괜찮다고, 별로라고)
- 나는 _____ 에 장애가 있다. (예 : 다리, 시각, 청각, 길찾기, 남의 마음을 몰라주는, 인간관계에...)

»...각각의 항목에서, 내담자와 나 사이의 차이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의 위치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과 만나고 경험하고 느껴온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상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 해당 항목에 체크 하고, 그 차이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써 봅시다.

내담자와 나 사이의		상담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공통점	차이점	
<input type="checkbox"/> 성별	<input type="checkbox"/> 성별	
<input type="checkbox"/> 학력	<input type="checkbox"/> 학력	
<input type="checkbox"/> 가족상황	<input type="checkbox"/> 가족상황	
<input type="checkbox"/> 성격형	<input type="checkbox"/> 성격형	
<input type="checkbox"/> 혼인여부	<input type="checkbox"/> 혼인여부	
<input type="checkbox"/> 외모	<input type="checkbox"/> 외모	
<input type="checkbox"/> 나이	<input type="checkbox"/> 나이	
<input type="checkbox"/> 성정체성	<input type="checkbox"/> 성정체성	
<input type="checkbox"/> 지역	<input type="checkbox"/> 지역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상황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상황	
<input type="checkbox"/> 국적	<input type="checkbox"/> 국적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장애	

» ... 나의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 성적으로 너무 자유분방하면 여자에게 손해다.
(5)그렇다 (4)조금그렇다 (3)모르겠다 (2)그렇지않다 (1)아니다 _____
- ★ 대학을 나와야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5)그렇다 (4)조금그렇다 (3)모르겠다 (2)그렇지않다 (1)아니다 _____
- ★ 부모가 다 계시는 편이 가정교육에 좋다.
(5)그렇다 (4)조금그렇다 (3)모르겠다 (2)그렇지않다 (1)아니다 _____
- ★ 낙태는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5)그렇다 (4)조금그렇다 (3)모르겠다 (2)그렇지않다 (1)아니다 _____
- ★ 어른이 되면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야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5)그렇다 (4)조금그렇다 (3)모르겠다 (2)그렇지않다 (1)아니다 _____
- ★ 다이어트나 성형 등은 자기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서이다.
(5)그렇다 (4)조금그렇다 (3)모르겠다 (2)그렇지않다 (1)아니다 _____
- ★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존대말을 써야 한다.
(5)그렇다 (4)조금그렇다 (3)모르겠다 (2)그렇지않다 (1)아니다 _____
- ★ 동성애는 호기심 많은 청소년기에 잠깐 있는 일이다.
(5)그렇다 (4)조금그렇다 (3)모르겠다 (2)그렇지않다 (1)아니다 _____
- ★ 문화적 혜택이 없는 시골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
(5)그렇다 (4)조금그렇다 (3)모르겠다 (2)그렇지않다 (1)아니다 _____
- ★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실업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5)그렇다 (4)조금그렇다 (3)모르겠다 (2)그렇지않다 (1)아니다 _____
- ★ 우리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서 집값이 떨어진다면, 반대할 것이다.
(5)그렇다 (4)조금그렇다 (3)모르겠다 (2)그렇지않다 (1)아니다 _____

69

50-55점

내담자의 삶을 이해하기 참 어려우시죠? 직업을 바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42-49점

특권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오셨나요?

32-41점

만약 당신이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면 아주 다른 생각을 가졌을 지도 모릅니다.

22-31점

상대를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더욱 마음을 열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12-21점

몇 가지 점에서는 자신만의 원칙이 있지만 대체로 열린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11점

당신은 거의 편견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군요! ^^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다면 다음 책을 참고하세요.

- 배경내(2000), 「인권은 교문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 에릭 마커스(2006), 「Is It a Choice? - 동성애에 관한 300가지 질문」, 박영출판사
- 정창권(2005),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역사 속 장애인 이야기」, 문학동네
- 이란주(2003), 「말해요, 찬드라 - 불법 대한민국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삶의 이야기」, 삶이보이는창
- 또하나의문화(2001), 「여성의 몸 여성의 나이 - 또하나의 문화 제16호」, 또하나의문화
- 알리스 슈바르쯔(2001), 「아주 작은 차이」, 도서출판 이프
- 권혁범 · 임지현(2000),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있었던 편견을 짚어봅니다.
대부분의 편견은 현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현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편견을 가지는 게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르고도 잘 살수 있는 것이 바로 특권이거든요.
수많은 편견 중 현재의 청소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아하는
학교, 가족, 성에 대한 편견을 짚어봅니다.

학력

- ★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나요?
- ★ 나는 혹시 능력과 관계없이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에 대한 호감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요?
- ★ 학벌주의 사회, 명문대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은 못난 사람의 콤플렉스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지 않아요

- 입소 가출청소년의 최종학력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재학·중퇴가 7.2%, 초등학교 졸업이 2.5%, 중학교 재학·중퇴가 52.3%, 중학교 졸업이 7%, 고등학교 재학·중퇴가 28.1%, 고등학교 졸업이 2.5%, 전문대 재학이상이 0.3%로 전체 중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이 9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청소년쉼터협의회, 2005년 가출 청소년실태조사)
- 4년제 사립대학을 다니는데 드는 총 등록금은 2007년 기준 2,760만원입니다. 부모의 지원 없이 4년간 대학을 다니면서 월평균 57만 5천원을 벌어야 하고, 한달 평균 용돈을 최소 30만원으로 잡는다면, 월 87만 5천원을 쓰게 됩니다. 만약 자취나 하숙을 해야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대학진학율은 83%로 세계 최고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인 40%, 미국은 27%이지요.
- 이렇게 대학을 어렵게 졸업하고 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요? 83%가 대학을 나왔는데도, 20대 평균 임금이 88만원이고, 20대의 74%가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하게 됩니다.
- 필요한 사람들만 대학에 진학하여 필요한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가족상황

- ★ 요즘 들어 가족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나요?
- ★ 주변 친지들의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 학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 ★ 노후에 가족 말고는 믿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당연하지 않아요

- 한국의 전체 가족구성원 중 소위 말하는 양친과 자식으로 구성된 핵가족의 비율은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부만 있는 가정은 11%, 한부모 가족의 비율은 17%이고, 독신 가구도 15%, 조부모 중 한 명과 사는 가족도 7%를 차지합니다. 가족구성원들도 다양합니다. 장애인 가족의 비율 10%이고, 재혼 가정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결혼하는 사람 중 13%가 국제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2004년 가족실태조사)
- 가족 내의 문제를 바깥에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사회적 금기입니다. 하지만 10명 중 3.4명이 남편에게 1년에 1회 이상 구타를 당한 적이 있으며,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의 비율은 20명 중 1명, 노인의 경우는 10명 중 1명이 6개월에 1회 이상 학대당한 적이 있다고 하고 그 중 8~90%가 가족에 의한 학대였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 2004년 가정폭력실태조사)

결혼과 성

- ★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 여자는 성을 절제하는 편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 내 아이(가 있다면)만큼은 여기에 온 아이들과는 다르게 순진하고 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지 않아요

- 2007년 중앙일보가 실시한 창간 42주년 국민여론의식의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2%, “결혼 전 이성과의 성관계는 어떤 경우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6%, “어떤 경우에도 이혼을 해선 안된다”는 의견은 35%로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견해는 해가 갈 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 스포츠 조선이 2007년 10월 수도권 8개 대학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3명이 이미 첫 성경험을 했다고 답했고, 이중 52.3%가 고등학생 때 첫 관계를 가졌다고 답했습니다. 남녀 응답비율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 에이즈퇴치연맹이 2007년 5월 서울시내 2,300여명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성경험이 있는 여학생 중 4명 중 1명이 낙태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006년 헤럴드경제뉴스의 조사에 따르면 86.1%가 혼전 순결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은 순결교육이 아니라 피임교육인 것은 아닐까요?

나의 편견

★ 나의 편견을 적어보세요.

편견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에 대해 잘 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혹시 나는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나는 동성애자는 치료 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편견을 적었으면, 이제 그것이 “편견”인 이유에 대해 찾아보고, “당연하지 않아요”에 적어봅니다.

★

★

★

★

★



당연하지 않아요

★

★

★

★

★

» ...내가 가진 경험을 적어보고, 이것이 상담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생각해봅시다.

- 〈방법〉 - 내담자의 나이를 생각하고, 상담자가 그 나이 때 겪은 경험으로 돌아가서 적어봅니다.
- 현재 나는 40살이고, 내담자는 16살이라면, 나의 16세 때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 학교와 집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 작업을 끝낸 후, 지금 내담자는 빈칸을 어떤 기억으로 채울까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기억나는 것이 없다.



(1) 내가 가진 학교에 대한 기억

→ 학교 건물, 교실, 함께 했던 친구들, 선생님...아침 등교 풍경...생각나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 가장 부끄러웠던 기억

★ 친구와 이런 일로 싸웠다

★ 가장 싫어했던 선생님과 좋아했던 선생님

★ 나의 최고의 반항

★ 가장 뿌듯했던 기억

★ 다시 돌아간다면...?

(2) 내가 가진 가족에 대한 기억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intended for drawing or writing.

→ 집안 풍경, 학교 길, 저녁 식사 풍경...등 생각나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 가출하고 싶었을 때/가출했을 때

★ 아버지가 가장 미웠을 때

★ 가장 부러웠던 가족

★ 감추고 싶은 기억

★ 가족이 부끄러웠을 때

★ 우리 가족의 비밀



★ 내가 가진 성(sexual relationship)에 대한 기억

★ 처음 봤던 야한 영화

★ 부모에게 성에 대한 교육/언급을 들었던 기억

★ 가장 최초의 자위

★ 내 몸에 있는 성기의 존재를 인식했을 때

★ 친구들과 나누었던 이야기

 더 찾아보기

- 우석훈 · 박권일(2007), 「88만원 세대」, 레디앙
- 조한혜정(2007), 「다시, 마을이다」, 또하나의문화

2. 상담자가 점검해야 할 몇 가지 원칙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 살펴야 합니다. 여성·청소년·성폭력피해에 대해 갖기 쉬운 편견들이 상담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처럼, 가해자와 가족으로 묶여 있는 내담자들이 겪는 내면의 혼란스러움과 갈등 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주의 상담의 원칙과 성폭력 피해청소년과 상담할 때 지켜야할 규칙 등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여성주의 상담의 원칙

여성주의 상담의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입니다.

1790년 프랑스의 페미니스트인 올랭 드 구즈가 <여성권리선언>을 제창한 이후, 여성참정권운동은 백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한 프랑스에서는 1946년에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상황으로부터 독립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성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여성참정권이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은 정치적 권리를 달라는 내용이었다면, 1968년을 전후로 세계적인 반전운동과 흑인민권운동이 일어나면서 여성운동의 제 2물결에서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라는 구호를 외치게 됩니다. 남성과 같은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족과 성, 사랑 등 사적 영역이라고 여겨져 왔던 부분들에도 사회적 모순으로 인한 착취와 억압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공/사 영역에 대한 구분이 해체되고 사적 영역 역시 정치적인 문제로서 제기되어야 진정한 해방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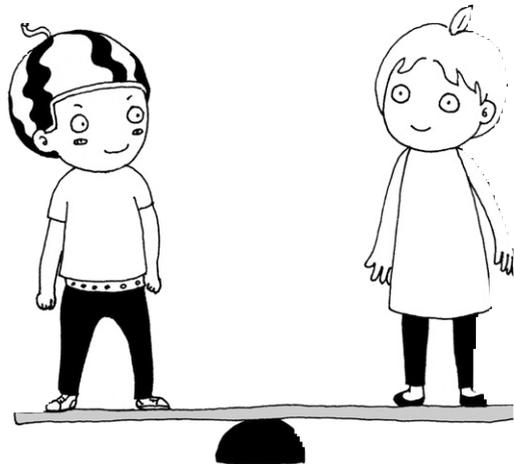
이로 인해, 개인적인 불행이라고 생각되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많은 여성문제들이 정치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주의 철학자와 정신분석학자, 심리상담가들은 그동안 프로이트를 비롯한 남성 정신분석가와 플라톤 등의 서양철학자들이 여자가 남성에 비해 미숙하고 감정적이며 사회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여자아이의 성장기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고, 감정과 이성이 분리되지 않는 관계적 자아형성을 인간 발달의 바람직한 유형으로 제시하면서 여성이 도덕적으로 미발달했고, 성적으로 위험한 존재라는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내담자와 상담자는 평등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내담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는 나이와 경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신분 등을 둘러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해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신과 상담 등에서는 내담자의 문제를 약물치료에 의존하려고만 하거나, 내담자를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로서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한테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오직 전문가인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태도를 통해, 내담자들을 “문제는 자신한테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는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주의 심리상담은 “문제는 당신에게 있지 않다. 그 문제가 당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당신을 다치게 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걸 해결해 낼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우울한 것은 자기 자신이 원래 그런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온 몸과 감정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가 가진 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상담자는 도움을 주는 존재이지, 문제해결사는 아닙니다.





서재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경험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담자와 상담자는 가부장제 사회의 억압을 공유하는 여성으로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성주의에 관심이 없고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상담활동을 시작했다고 해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말이 바로 “이 문제의 원인은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성폭력 문제에 무능한 사회구조에 있다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성주의 상담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해 후유증을 여성적인 정신적 질병으로 특수화시키지 않고, 증상을 판단하기보다는 해석의 힘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가출 청소년들이 겪는 성과 관련된 문제를 비행 청소년의 일탈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스스로 좌충우돌해가면서 풀어보려는 문제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 피해 상담의 기본



성폭력은 성차별주의의 산물인 “여성문제”입니다.

성폭력은 개별 여성이 겪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집단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차별주의의 산물입니다. 또한 성폭력은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 사회의 비인간적인 착취와 폭력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성폭력은 일부 정신 나간 남자들의 변태적인 성적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몸을 끊임없이 대상화하는 남성 중심적 문화의 산물로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 남성들 역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만, 이때 대부분의 남성 피해는 남성에게 의해서 ‘남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성의 몸을 파편화하고 대상화하는 남성중심적 문화의 산물로서 성폭력이 일어나지만,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통해 겪는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새롭게 자아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우리는 이런 남성중심적 문화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적응하고 협상하며 살아가는 것 입니다. 성희롱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성희롱이라고 문제 삼았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며 그 상황을 참아내기도 하며, 조신하고 수동적인 것을 여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성적으로 적극적인 행동과 말을 사용하면서 이 기존의 여성 역할에 저항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문제는 “여성”이라는 “몸”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혼란과 갈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라는 질문을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유는 여성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내가 단지 여성의 몸을 가졌다는 이유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자신이 생각하는 “나”와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의 몸을 가진 존재인 “나”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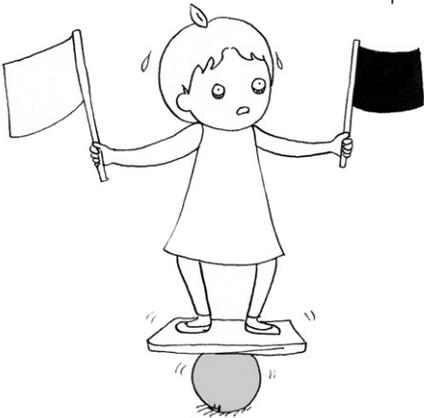
둘째) 정상가족중심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흔히 말하는 소위 엄마, 아빠, 아이가 함께 사는 정상가족의 비율은 47%에 불과합니다(통계청, 2003).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 맞벌이 가구,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 별거 중인 부부, 동거 관계, 동성애 파트너 관계, 독신 가구 등 가족 상황과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부모가 없거나, 다른 사람들과 살고 있거나,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만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제도·일상에서 구성된 정상가족중심주의는 가족 내의 폭력과 차별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2004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가구 중 1가구가 부부 간에 신체적인 폭력이 행사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상가족에 대한 신화는 여전히 미디어와 언론, 법·제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의 가출 동기에 대해 조사한 청소년쉼터협의회(2005)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나 가족의 폭행 및 폭언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새아빠나 새엄마와의 갈등이 14.7%, 가정 내의 경제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0.3%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도 쉼터 평균 4.1명으로 총 3.6%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출이유에 대한 중복응답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여자 청소년들의 14%가 성폭력을 가출의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가족 내 문제를 가족 안에서 해결하라는 경향이 아직 높은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가출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귀가를 바람직한 퇴소로 보고, 실제로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의 59.9%가 귀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54.6%가 귀가해도 전과 같은 문제를 겪게 될 까봐 귀가를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의 폭

력·학대·경제적 불안정·부모의 유기·성폭행 등을 이유로 가출한 이들에게 귀가가 반드시 바람직한 퇴소일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더구나 친부·의부에 의한 성폭력이 가출의 이유였다면, 귀가 조치는 피해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귀가가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가족의 신화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으아으아으아





성폭력 피해에 대해 “잘 듣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됩니다.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잔 브라이슨(1997)은 전시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를 예로 듭니다. 트라우마는 흔히 자아가 파멸되었다고 간주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외부적 공격으로 인해 트라우마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의 이야기(self-narrative)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표현할 언어도 없고 들어줄 대상도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간흐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는 데 극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성폭력 피해청소년들, 특히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들은 “어떻게 가족 안에서 그런 일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라는 말을 직간접적으로 들으며, 자신이 겪은 경험을 인간으로서의 경험 안에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어려워합니다.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역시, 이들의 경험을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적 삶이라는 것의 한계를 넘는 경험”이라는 분노와 경악으로 듣는 이상,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한 심리적 압력과 감정이입의 부재,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청소년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3) 친족성폭력 피해 상담에서 고려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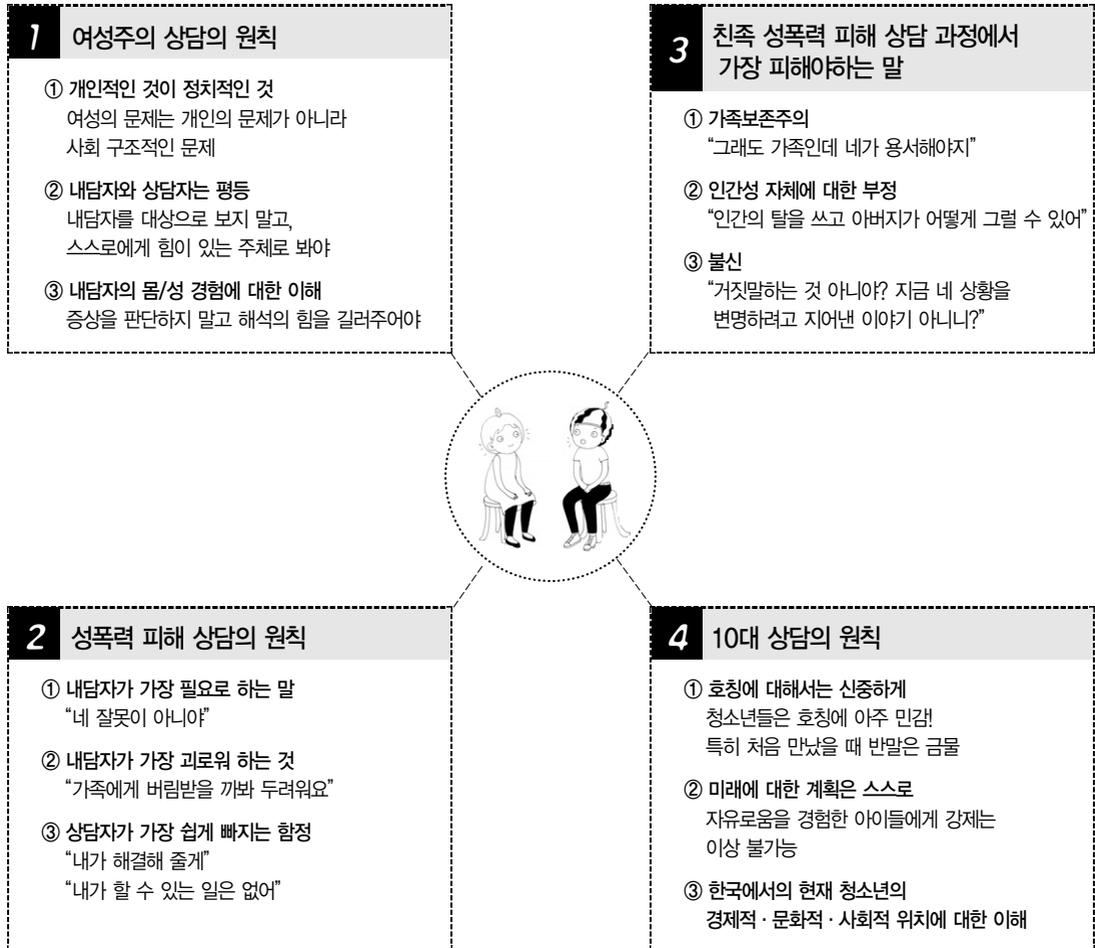
하지 말아야 할 말

친족성폭력은 아버지, 의붓아버지, 오빠, 삼촌 등 신뢰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서는 안 될 일 혹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피해 상황의 이야기 자체를 상담자가 눈치 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오빠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만 기분 나쁘긴 했다”라는 말처럼 양가감정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족성폭력 피해 상황은 남 앞에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유난히 오래 걸립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안돼”라는 가해자의 말 때문에도 그렇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기에는 너무 어려서이기도 합니다. 혹은 엄마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는 비난을 받았던 경험 등을 통해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친족성폭력 피해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몇 배로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상담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왜 이제야 얘기하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말 자체가 또 다른 비난이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라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생각해볼 거리

리즈 켈리(1988)는 40여명의 성폭력 피해 여성과 인터뷰를 한 연구 결과, 여성들 자신의 정의에 따르면 친족성폭력에 해당되는 것은 아버지 위치의 인물, 혹은 같은 집에서 사는 남성에게 의한 학대로 보다 폭넓게 정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아버지, 삼촌, 할아버지, 남자형제, 사촌부터 세입자, 아버지의 친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혈연을 중심으로 한 근친개념을 이렇게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바꿀 때, 우리는 친족성폭력이라는 사건을 ‘인간 이하의 행동이거나, 혹은 ‘규범’에 어긋난 아주 특별하고 놀랍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취급하면서 그런 행동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족성폭력이 심각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혈연가족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은 사람에게 의해서 그러한 폭력이 저질러졌으며, 많은 경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림 2〉 친족성폭력 상담의 준비



📖 더 읽어볼 책

- 미리안 그린스펜(1995),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 또하나의문화
-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2004), 「성폭력 사건 지원-나침반을 찾아라」, 한국성폭력상담소
- 주디스 워렐/파멜라 리머(2004),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 한울 아카데미
- 김민예숙외(2005), 「왜 여성주의 상담인가」, 한울 아카데미
- Susan J. Brison(1997) 「Outliving Oneself :Trauma, Memory, and Personal Identity」,
『Rethinking the self』, edit. D. Meyers, Westview Press
- Liz Kelly, 1988, 『Surviving Sexual Viol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74~96

3.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초기 상담 체크리스트

기본 인적 사항 및 피해 상황 파악				
상담접수	상담일시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요일 오전/오후 _____시 _____분 ~ _____시 _____분 (소요시간 _____분)		
	상담방법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대면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피해자 인적사항	이름		나이	
	주소		이메일 주소	
	연락처		학교	
	가족상황			
피해유형 및 피해 상황	피해유형 : 강간(미수), 특수강간(강도, 윤간)(미수), 강간치상, 성추행, 성희롱 등 피해상황 : 최초 피해일_____과 마지막 피해일_____, 피해횟수 _____회 등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장소		
구분	피해자		가해자	
성별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남	
연령	사건 당시 연령 () 현재 연령 ()		사건 당시 연령 () 현재 연령 ()	
직업	사건 당시 직업 () 현재 직업 ()		사건 당시 직업 () 현재 직업 ()	
장애유무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정신장애인, 지체장애인, 기타_____)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정신장애인, 지체장애인, 기타_____)	
다른 피·가해자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_____명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_____명	
피·가해시 상태	<input type="checkbox"/> 알콜 <input type="checkbox"/> 약물 <input type="checkbox"/> 수면중 <input type="checkbox"/> 구분 없음		<input type="checkbox"/> 알콜 <input type="checkbox"/> 약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구분 없음	
초기 지원을 위한 체크리스트				
피해 사실 주변인 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엄마 <input type="checkbox"/> 아빠 <input type="checkbox"/> 형제 자매 <input type="checkbox"/> 친구 <input type="checkbox"/> 학교 선생님 <input type="checkbox"/> 데이트 상대 <input type="checkbox"/> 채팅 상대 <input type="checkbox"/> 심터에 있는 친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인지 후 태도				
현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가족 중 () <input type="checkbox"/> 친구 중 () <input type="checkbox"/> 선생님 중 () <input type="checkbox"/> 기타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중 경제적 지원 가능 여부	(예 : 용돈지원, 주거지원, 학비지원, 주거독립지원 등)			
가족상담 필요여부	<input type="checkbox"/> 필요하고 가능 <input type="checkbox"/> 필요하지만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불필요하고 불가능			
경찰신고 여부		병원방문 여부		심리상담 여부

4. 친족성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



“가족과 절연하는 것은 힘겹다. 그런데 기적을 기다리는 것은 더욱더 고된 일이다.” - 『아주 특별한 용기』

1) 친족성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

199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나 행실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여전히 성폭력을 친고죄를 존속시키므로써 1:1 관계에서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하는 과정의 어려움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강간의 개념 역시 기해자·남성중심적인 성기 삽입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물질 삽입이나 유사성 행위 강요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① 부부강간죄 성립 조항 신설, ② 강간의 대상 확장, ③ 최협의 강간 개념 확대와 비동의간음죄 신설, ④ 공소시효 연장 혹은 폐지, ⑤ 친고죄 폐지 등이 여전히 성폭력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친고죄 폐지는 성폭력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법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 현행 형법상 강간치상과 강간치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인 대상의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사실이 알려지면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것이 친고죄의 존치 이유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정조나 순결의 문제들을 재생산할 뿐 피해자 보호의 실익이 없으며, 범죄에 대한 기소를 피해자에게 미루어버림으로써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셈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성폭력을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지 않게 하는 등 역기능만 있을 뿐 시급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폐지되어있으며, 유아에 대한 유사성행위도 강간죄에 포함하는 등 강간의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된 상태로 비교적 사회적 해결 의지가 법적으로 강력하게 명시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법적 의지는 가장 대표적인 성폭력 관련법인 성폭력특별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방향은 크게 장애인·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997년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가중처벌 강화와 일부 친고죄 폐지, 보호·감독관에 대한 책임 강화 등입니다. 2003년의 주요 개정 내용은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 피해자를 수사할 때 지켜야 할 수사관들의 태도에 대한 규정안이 중심입니다. 2007년의 주요 개정 내용은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유사 강간을 인정하여 아동 성폭력의 범주를 확대하고, 장애인 보호 시설장 등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족성폭력의 피해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신이 아버지, 혹은 오빠 등을 고소할 경우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친족성폭력의 피해청소년이 고소를 원치 않는다고 해도, 친족성폭력은 이미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 18세 미만의 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개인 간의 혹은 가족 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서 처벌의 대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도, 내담자도 아닙니다. 피해자는 고소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다고 피력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는지 여부는 법원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현장에 종종 고소 여부를 내담자에게 묻거나, 고소를 권장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하는 온정주의적 사고방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픈 마음이 들거나,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 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개인적으로 용서하거나 혹은 형을 줄여달라는 탄원을 쓸 수 있지만, 음주 운전 자체가 범죄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하고픈 피해자의 마음은 고소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발휘될 수 있습니다.

● 일러두기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항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 15조 피해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항목을 살피면 “법원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제 29조 또는 제30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항에 따라, 가족 내에서 청소년이 성폭력피해가 생긴 이후 29조 등의 규정된 청소년 보호시설 등에서는 친족성폭력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법적 대응은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 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는 1994년 개소한 이후 총 320여명의 피해 생존자가 입소하여 법률 지원과 심리상담, 학교 및 학습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해왔습니다. 이 중 2004년까지는 78%가 친족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95%가 친족성폭력피해로 인해 입소하였습니다. 대부분 가해자와의 주거 분리 이후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도 억지로 법적 대응을 하지는 않았으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피해자의 대부분은 나중에 고소를 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할 경우에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 외의 다른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 때문에 피해자가 심정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소를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가족 내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수치스러워하거나 부인하고 싶어하면서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거나 피해자를 원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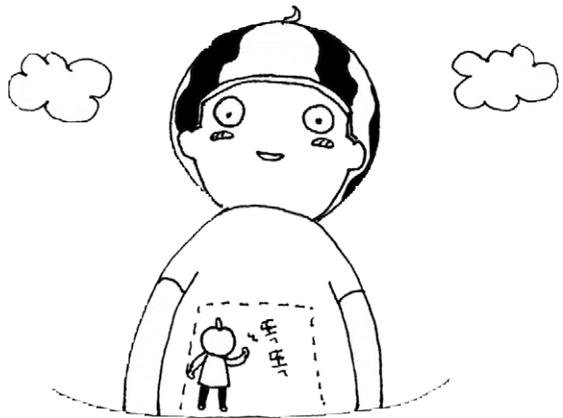
법적 대응을 한 피해자들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잘못임이 판명나 좋았다”,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야 마음껏 할 수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고소 과정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서 기뻐다” 는 등의 말을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라는 불안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법적 대응이 주는 치유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외의 가족들도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기보다는 가해자의 범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해자가 변할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라는 희망에서 고소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 통상적으로 나이와 경제력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가해자는 좀처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외부의 도움을 구하거나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듣기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시간 동안에는 계속 피해 당시의 사건으로 돌아가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고 난 이후 법정의 판결까지의 과정을 마무리한 피해자들은 이제 피해 당시의 사건에서 벗어나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법적 대응은 가해자의 처벌과 사회정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Ⅲ.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의 심리상담

1. 심리상담
2.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이 나타내는 문제들
3. 전반적인 심리상담 과정



1. 심리상담 -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과 마음으로 만나다

상담의 이름으로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는 가운데, 상담자는 때때로 아주 특별한 상황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심적인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겁고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를 내가 적절히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특히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경험하지 못했던 상담자에게 있어서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과의 만남은 더 당황스럽거나 고민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들도 실상 우리가 만나고 있던 수많은 내담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심리상담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들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만나고 끌어안으며 마음의 여행을 함께 떠나는 평범한 내.담.자.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평범하지만 아주 조금은 특별한 이들과 함께 하는 심리상담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 그들은 무엇을 경험한 것인가 -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의 외상(trauma)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후에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극심한 파장을 일으킬만한 큰 사건이나 사고를 '외상(trauma)'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외상을 통해 우리는 일차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외상의 충격으로 인해 뒤따라오는 심리적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측면을 정신증적 진단으로 설명할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인용할 수 있는데, 이는 외상에 대해 개인이 극심한 공포와 무력감, 고통을 느끼게 되며 사건에 대해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회상이나 꿈, 혹은 외상성 사건이 재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의 증상 등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뿐만 아니라 외상에 의한 깊은 심리적 상처 때문에 만성적 우울감이나 불안감, 또는 해리나 망상, 성격장애 등의 여러 가지 심각한 정신증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치료적 개입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폭력은 보다 더 심각하고 특별한 외상으로 간주되며, 친족성폭력은 사회에서 금기시 되고 있는 '근친상간적 문제'가 개입된, 매우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을 만나는 상담자의 마음은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갖는 특수성만큼 그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도 어느 측면에서는 감히 공감조차 할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 정신 증적 진단을 고려할 때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 DSM-IV>을 참고합니다. DSM-IV는 여러 가지 정신장애에 대해 증상적 특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은 매우 비싸지만 한 권쯤 구비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 '근친상간적 문제' 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의 필자의 덧붙임 :

이는 매우 사용하기 민감한 측면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알립니다. 필자가 사용한 '근친상간적 문제'라는 것은 서로의 욕구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친인척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법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깊은 관계가 금기시 되고 있는 친인척의 범주 안에서 일어나게 된 성폭력의 문제라는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알립니다.

그러나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들이 경험한 외상의 핵심은, '기댈 곳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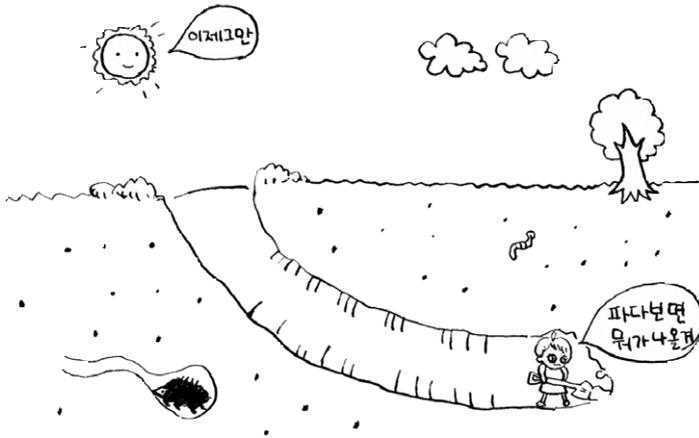
우리는 어떻게 성장했던가요? 일차적 신뢰 집단인 가정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서서히 독립하지 않았던가요. 특히 청소년 시기는 가족에게 의존하면서도 독립을 시도하는 복잡한 시기지만,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의존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독립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심리적 상처를 이겨 왔던가요? 이미 우리 자신에게 준비된 자생적인 치유력을 통해 이겨나갈 수 있었지만, 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의미로운 타인인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신뢰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들은 자신이 의존해야 할 대상, 자신을 일차적으로 보호해 줘야 할 대상에게 가해를 당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친족성폭력의 가해자가 친 부모가 아닌 친척이더라도 그러한 어려움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친 부모가 적절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양육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의미이기에 이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그들은 상처를 보듬어줄 대상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뿐인가요. 상처를 안고 철저한 고립감을 느끼는 그들에게 인간 발달의 중요한 과제인 성(性) 문제가 개입됨으로 인해 혼란감은 더 가중됩니다. 이는 성(性) 문제는 단순한 욕구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감 문제에 깊이 관련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원적 터전'을 잃은 심리적 고아들. 민감한 성(性) 문제에 너무 이른 시기에 충격적으로 노출되어 버린 혼란스러운 청소년들. 이들을 우리는 무엇을 도와야 하며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일까요.

✧ 그들과 희망을 노래하다 -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심리상담의 목적과 의미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치료적 개입은 그들이 외상으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고 이로 인해 어그러져 버린 심리적 상태를 회복하게 하여 단기적으로는 그들이 다시 일상적인 기능들을 적절하게 유지시켜 나가게 돕고, 장기적으로는 그들 자신의 일생적 발달 과업을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입 초점을 외부적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피해청소년의 개별적 심리상태에 두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상담자가 이들을 단순히 '고쳐주거나 변화시켜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상담자는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들 안에 있는 심리적 자원을 회복시키고 강화시켜서, 변화시킬 수 없는 절망적 환경이나 상황 안에서도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방어력과 적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람들이 모두 인생의 위기에서 스스로 치유력을 발휘하는 '복원력(resilience)'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최근에 이런 '복원력(resilience)'의 개념이 부각되어 여러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심리치료적 개입을 설명하자면,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복원력(resilience)'을 최선의 방향을 향해 최대한 발휘시키도록 돕는 과정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복원력(resilience)'의 개념을 다루고 있는 좋은 책 하나를 추천합니다.
 '보리스 시릴니크'가 저술한 「불행의 놀라운 치유력」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앞에서 우리는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에 대해 '기댈 곳을 잃은 존재'로 이해하기도 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독립을 꿈꿀 수 있는 존재'로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들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존재인 청소년 시기에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들이 이미 성격적으로 고착화 되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변화되기가 쉽지 않으나 청소년은 아직도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자기 모습을 완성해가려고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희망은 충분합니다.

상담자가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이 가진 특수한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나 이와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잠재력 또한 함께 보고 이를 지지하고 강화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해를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나, 그들을 불쌍한 존재나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연약한 존재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족성폭력의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있지 말았어야 할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친족성폭력 사건이 이미 뿌리 깊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원가족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이 경험했던 깊은 고통의 충격으로 인해 당장은 그들 자신에 대한 자원과 긍정성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상담자는 그들이 가진 고통과 힘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심리상담은 바로 기댈 곳이 없다고 느끼는 그들의 깊은 상처를 공감하고 보듬는 과정인 동시에 새로운 인생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들이 자신 안에 있는 긍정적 힘을 발견하고 발휘하게 하는 위대한 여행입니다.

2.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이 나타내는 문제들 - 그들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門)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들과 처음으로 조우하게 되는 상담자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특수한 만큼, 그들이 특별하게 나타내는 문제들이나 증상이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답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실상 이들이 나타내는 문제는 일반적인 성폭력피해자의 증상들 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일반적인 성폭력피해자들이 보이는 증상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증상적 특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마다 나타낼 수 있는 문제들은
더 다양한 측면과 정도로 나타날 수 있기에 경직된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려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나타내는 다양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증상들은 그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적인 감정을 만나러 가는 길,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문(門)일 뿐입니다.

» ... 불안감

- 밤에 잠을 자기가 불안하고 악몽에 시달려 숙면이 어렵고 야뇨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 성폭력 외상이 자극되는 조그만 단서에 의해서도 신체적 반응(소름끼침, 식은 땀, 두근거림 등)이 일어난다.
- 성폭력 외상에 관련된 장소나 사람을 피하려고 하고 그에 관련한 대화를 피한다.
- 지나치게 경계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크게 놀란다.
- 타인에게 자신이 이상하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에 외출을 꺼리거나 혼자 있고 싶어 한다.
- 감정이 일관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기복이 심하다.



» ... 우울감

-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불면증에 시달린다.
-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섭취하지 못한다.
- 조그만 일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주 운다.
- 무기력감과 권태감을 나타낸다.
-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쉽게 내거나 분노감정을 폭발시킨다.
- 집중이 어렵거나 멍한 상태를 보인다.
- 모든 일에 부정적인 시각을 먼저 나타낸다.
- 성폭력 외상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여겨서 낮은 자존감을 표현한다.
- 오히려 너무 들떠있거나 과도하게 밝고 활달하게 행동한다.



» ... 분노감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한 분노감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오랜 기간 억압되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사소한 일에도 말이나 행동으로 통해 지나친 공격성을 드러낸다.
-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나 분노감이 가득한 눈을 하고 있거나 과도하게 경직된 태도를 보인다.
- 수동공격적인(타인에 대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난, 규칙이나 지시를 어김) 행동을 나타낸다.



» ...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이나 증상

- 갑자기 여러 가지 신체적인 고통을 강하게 호소하나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없다.
- 칼과 같은 날카로운 물체로 신체의 일부를 베거나 스스로 머리를 찢거나 때리는 등의 자해행동을 한다.
- 자살시도를 하는데, 이를 타인에게 스스로 알리거나 쉽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한다.
- 작은 스트레스에도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 ... 대인관계의 어려움

-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작은 갈등에도 좌절감을 크게 느낀다.
- 대인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불안증상이나 불편감을 호소하면서 함께 하는 활동을 거부한다.
-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며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상적인 관계만 맺는다.
- 어떤 타인에 대해 오히려 과도하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사소한 일로 쉽게 실망하여 관계를 극단적으로 끊어버리거나 원망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



» ... 성(性)의식 및 성태도의 문제

- 성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면서 과도하게 억압적인 인식이나 태도를 보인다.
- 오히려 충동적이고 탐닉적이고 문란한 성태도를 나타낸다.

» ... 그 외의 다양한 문제

- 성폭력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 오히려 기억하지 못한다.
- 자신의 정체감에 대한 혼란감을 호소하거나 망상, 환청 등을 경험한다.
- 자신이 속한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경험한다.
- 사소한 행동이나 일에 대해 강박적으로 신경쓰거나 몰두한다.
- 학습에 대한 동기저하나 어려움, 나아가 학교생활의 부적응 및 등교거부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 **고려해야 할 특수한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다를까**
 -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의 특수한 문제와 이에 대한 개인 지침



1)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은 가해자에 대해 분노감뿐만 아니라 연민이나 애처로움 등의 다양한 양가감정을 경험하다.

단순히 '가족' 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피해청소년이 속했던 원가족에 이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청소년이 보기에 가해자 또한 마음이 병들고 힘든 존재라는 인식이 강하여 연민을 강하게 느낍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있는 유일한 가족 구성원일 때는 일종의 '심리적 공생관계' 특성으로 가해자에 대한 독립이 매우 힘든 경우도 있어서 다시 가해가 이루어진 원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욕구를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친인척일 경우도 그에 상관하고 있는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의 선처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와 가해자가 법적인 절차를 밟은 후 "그 인생이 달라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피해자 자신의 불안 때문에도 다양한 양가감정과 법적 조치에 대한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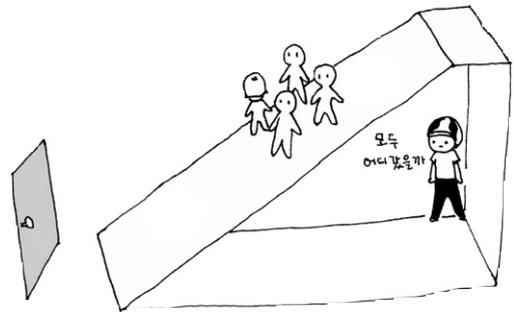
- ★ "아빠에 대해 큰 분노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불쌍하고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괴로워요"
- ★ "오빠에 대해 꼭 법적인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덮어두면 안 될까요?"
- ★ "큰 아버지에 대해 고소를 하고 나서 더 괴로워요. 그냥 법적 절차를 그만두고 싶기도 해요"
- ★ "그냥 다시 돌아가서 아빠랑 살고 싶어요. 조금은 두렵기도 하지만, 내게 미안해하면서 나와 다시 함께 살기 원하는데 불쌍하기도 하고,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요."
- ★ "작은 어머니랑 할머니가 친척 오빠를 불쌍하게 여겨서 한 번만 봐달라고 매달리니까 고소가 어려워요"
- ★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흔적이 남는다면요? 그래서 내가 삼촌의 인생을 망치면 어떡하죠? 그냥 내가 참고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다루어가요

- ★ 가해자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면서 피해자가 양가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공감하면서 이에 대해 피해자가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우라.
- ★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에 있어서 느끼는 피해자의 갈등이나 불안 등을 충분히 표현하게 하고 사법처리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각각으로 나누어 그에 따라 예상되는 상황과 피해자의 감정, 생각이 어떨지에 대한 부분을 탐색하게 하라.
- ★ 어떤 경우든지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해 필요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리라. 가해자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라.
-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자신의 인생이기에 피해자가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절차가 어떤 의미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하라.
- ★ 어떤 상황에서든지 피해자의 마음과 생각, 그에 따른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이후에 다양한 감정이 유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이를 공감하고 수용하라.
- ★ 가해자에 대해 강한 심리적인 밀착을 이루고 있을 경우에, 계속해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자신을 분리시켜서 구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분명하게 초점을 두어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라.

2)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의 다른 가족구성원이 늘 지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제 삼자인 가족 구성원이 피해청소년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피해청소년이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오히려 피해청소년을 비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친인척의 경우 그 가해자의 원가족이나 친부모 중 하나일 경우에 그 나머지 부모에 의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부가 성폭력 가해자일 경우 모가 피해청소년에게 부에 대한 선처를 바라거나 피해청소년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비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모가 부에 대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날 가능성이 큼니다.



이렇게 호소해요

- ★ “큰 엄마가 ‘사촌오빠가 너무 후회하고 있는데 내가 고소를 취하지 않는다’면서 나보고 너무 독한 사람이에요”
- ★ “엄마가 아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나한테 선처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죠? 배신감이 들고 너무 화가 나요”
- ★ “할머니는 내가 당한 것이 다 내 몸가짐이 나빴던 이유도 있다면서 뭐라고 하세요. 짜증나 죽겠어요”
- ★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안 하네요. 내가 고소를 취하지 않으면 모녀 인연을 끊자고 했는데, 정말 인연을 끊으려는 건지.. 복잡하고 힘들어요”

이렇게 다루어요

- ★ 피해청소년이 최선을 선택을 했으며 언제나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하도록 하라.
- ★ 사람은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존재임을 알리고,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여러 가지 반응이나 태도로 인해 경험되는 피해청소년의 다양한 감정을 탐색하고 표현하게 하라.
- ★ 가해자에 대해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상황에 대해 객관화 시켜서 탐색하고 통찰하여 이해하는 과정을 갖게 하라.
- ★ 친족성폭력의 책임에 대해 피해청소년을 초점화 시키는 반응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탐색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성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라.
- ★ 피해청소년의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상담가에게 “피해청소년이 고소를 하도록 선동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비난을 해올 수 있다. 이때, 일단 가족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입장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표현을 해야 하나 성폭력의 가해 문제는 정당화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라. 또한 상담자는 일차적으로 내담자인 피해청소년의 회복과 안위를 기준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음에 대해 알게 하라.

3)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때, 함께 남아있는 원가족을 걱정하게 되는데 특히 다른 형제나 자매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원가족 내에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즉 피해청소년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의존적 대상으로 생활해왔으며 특히 부모를 대신해서 형제들에 대해 부모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렇게 호소해요

- ★ “엄마가 내가 없으니까 힘들다고 하네요.. 들어가기 싫은데 마음에 걸려요”
- ★ “동생들이 걱정돼요. 혹시 내가 없어서 아빠가 동생들에게 그런 짓을 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다루어가요

- ★ 상담자는 피해청소년이 남겨둔 가족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공감하되 현재 남겨둔 가족을 위해서 피해청소년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과 할 수 없는 일들을 구별하여 탐색하게 하라.
- ★ 피해청소년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부분에 까지 비합리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탐색하고 이에 대해 통찰하여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어느 정도 객관화시킬 수 있도록 하라.
- ★ 피해청소년이 걱정하는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법적인 절차가 필요함을 알리고 이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4) 친족성폭력에 의한 심리적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가해자가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원가족에 대한 신체-심리적 독립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며 이를 다루어야 한다.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은 자신의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가해자와 분리가 일정기간 이루어짐으로서 가정으로 복귀가 가능해지더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친족성폭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원가족 내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 어려움을 겪었을 경우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해요

- ★ “아빠가 없지만,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는 건 싫어요”
- ★ “그 일이 있었던 동네는 정말 작아서 내가 당한 일들을 다 알고 있을텐데... 거기에서 아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이 불편해요”

이렇게 다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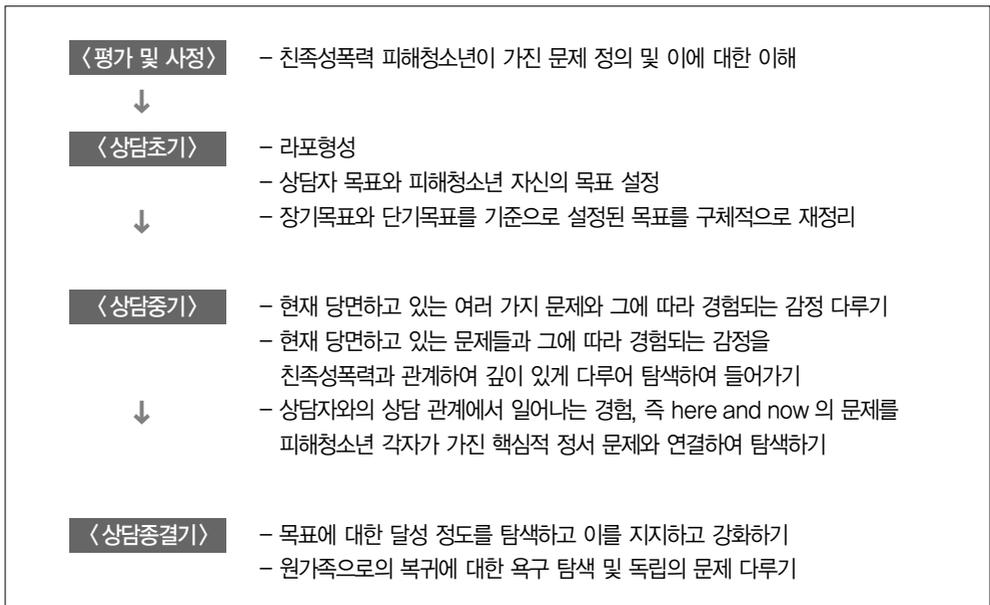
- ★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이 본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하는 이유들을 충분히 탐색하고, 상담자 또한 그것이 피해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깊이 고려하여 적절한 거취 방법을 모색하라.
- ★ 독립이 불가피한 경우, 여러 가지 독립의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피해청소년의 독립을 위해서 상담자가 해줄 수 있는 일들과 피해청소년 스스로가 준비하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탐색하라.
- ★ 다시 본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경우에는, 자신이 변화하였어도 가정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면을 인식하게 하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청소년의 감정적인 어려움을 살펴볼게 하라. 또한 피해청소년 자신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탐색해 보게 하면서 다시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상담자에게 또 다시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도움의 손길이 열려 있음에 대해 지지하라.

3. 전반적인 심리상담 과정

-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마음의 여행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을 위한 심리상담의 과정에는 위에서 밝힌 몇 가지의 특수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는 상황이 있으나 외상으로 인한 그들의 정서적 불안감이나 여러 가지 행동적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일반적인 심리상담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상담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내담자가 가진 핵심적 정서 문제를 통찰하고 이에 대해 깊은 차원에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할 때, 앞에서 언급한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이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와 증상을 이해하고, 이러한 측면들이 실상 그들 스스로 엄청난 외상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획득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임을 이해하는 과정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들이 자신이 성폭력 외상에 관련하여 형성하게 된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이나 인지가 존재할 때, 이를 함께 규명해보고 적절하게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필요에 따라 상담자의 적극적이고 분명한 지도자적 역할도 요구됩니다.

일단,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과정은 다음의 절차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평가(evaluation) 및 사정(assessment)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피해청소년이 현재 나타내고 있는 정서, 행동적인 문제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보통 '진단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 진단은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여 심리치료적 개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같은 경험을 했어도 이에 대한 인식 및 반응은 일률적일 수 없는데,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또한 각자가 경험하는 정서적 문제의 정도 및 양상이 모두 다르며 이에 따라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개별적인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심리상담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은 단순히 '성폭력'의 문제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전부터 자신의 원가족 내에 뿌리 깊은 여러 가지 가족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심리적 손상이 계속되어져 왔을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성폭력으로 인해 경험하게 된 정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외 가정 환경적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다 깊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심리평가'의 과정인데, 심리평가는 고도로 훈련된 임상심리사들과 심리치료자들의 사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이 갖는 복잡한 정서적 문제의 양상으로 인해 신중한 평가과정과 진단이 중요한바, 단순화된 몇 가지의 평가 기법을 가지고 이들의 심리상태를 선불리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따라서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에 대한 심리평가는 일단 전문적인 심리치료 기관으로 의뢰하여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에 대한 초기 면접상담 원칙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단과 이해에 있어서 전문적인 심리치료 기관에서의 종합적인 심리평가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지만, 기관의 사정상 이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때는 초기 면접 상담을 통해 피해청소년에 대해 사정(assessment)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초기 면접 상담과정에서 필요한 몇 가지의 원칙을 소개합니다.



● 마음을 편안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

- 피해청소년이 필요한 보호를 받고 정당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라.
- 최대한의 도움을 주기 원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서 피해청소년이 경험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인식시키라.
- 이미 법적 고소 중에 있어서 여러 번의 진술 경험이 있을 때는, 피해청소년이 진술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에 기준하여 더 보완해야 할 정보들만 수집하라.
- 상담자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외상에 관해 언급하기를 피할 때는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어려움을 공감하고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지 말라.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다시 이야기 해줄 수 있음을 상기시키라.

● 성폭력에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라

- 확보된 정보가 없어서 성폭력 피해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할 때는 이것이 진술하기에 매우 민감한 부분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피해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도움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과정임을 알려주며 요청하라.

★ 아래의 사항들을 파악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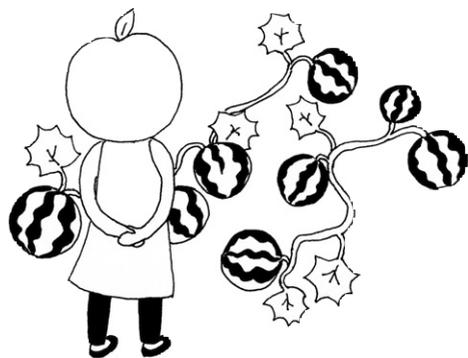
- 성폭력이 시작된 시기와 지속된 기간은 어떠한가
- 성폭력 수위의 정도는 어떠한가 (추행의 정도인가, 성기 삽입이 이루어졌는가)
- 성폭력이 이루어진 방법은 어떠한가 (수면시간 중 이루어졌는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여러 가지 회유를 통해 이루어졌는가)
-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가
-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거나 도움을 요청했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 정서 및 행동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라

친족성폭력과 관련하여 경험했던 정서, 행동적 측면에 대해 과거에서부터 최근 까지 구체적으로 탐색해야 하는데, 특히 피해청소년이 보이는 비언어적인 정서 또한 민감하게 파악하라.

★ 아래의 사항들을 파악하라.

- 최근의 수면 패턴은 어떠한가
- 최근의 신체적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 최근 음식을 섭취하는 상태는 어떠한가
- 최근 가장 자주 경험되는 기분은 어떤 것인가
- 친족성폭력피해를 처음 경험하고 나서 어떤 정서적 변화가 있었는가
- 친족성폭력피해가 지속되면서 변화되었다고 생각되는 정서-행동적 특성은 무엇인가
- 친족성폭력피해가 시작되고, 지속되었던 당시 가해자에 대해 어떤 정서를 경험 했는가
- 현재는 친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어떤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가
- 친족성폭력피해에 대해 떠올리거나 그것을 말할 때 느껴지는 감정과 신체적 반응은 무엇인가
- 표정은 어떠한가
- 눈맞춤 정도는 어떠한가
- 진술시 보이는 태도나 자세 등의 행동적 특성은 무엇인가
- 목소리 크기 및 톤(tone)의 특성과 발화량 정도는 어떠한가



● 개인적인 발달사 및 가족관계를 탐색하라

상담자는 이 영역의 정보를 통해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의 또 다른 원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며 동시에 피해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회적 지지체계 및 심리적 자원을 찾으라. 또한 피해청소년이 자신이 살아왔던 삶과 환경 안에서 어떤 인식 태도를 형성해왔는지에 대해 가늠하라.

★ 아래의 사항들을 파악하라.

- 가해자를 포함한 각 가족 구성원은 피해청소년에게 어떤 특성으로 인식되는 존재인가
ex.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니?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니? 동생은 어떤 동생이었니? 등
- 각 가족 구성원과의 심리적 친밀감은 어떠한가
- 어려움을 나누거나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신뢰로운 가족 구성원은 누구인가

- 출생 후 최초의 기억은 무엇인가
- 특정한 연령대를 기준으로 떠올려지는 기억은 무엇인가
ex. 초등학교 저학년 / 초등학교 고학년 / 중고등학교의 각 학년
-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무엇인가
- 가장 슬펐던 기억은 무엇인가
- 가장 분노감을 느꼈던 기억은 무엇인가
- 친족성폭력피해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신을 지탱해 준 것은 무엇이었는가

● 현재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라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이 현재 가장 갈급하게 느끼는 필요와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그들이 가진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심리적 성숙의 정도 등을 추정하라.

★ 아래의 사항들을 파악하라.

- 현재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 기적이 일어나서 세 가지를 변화시키거나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바라겠는가

2) 상담 초기

초기면접 과정을 통해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리상담 과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상담초기는 피해청소년이 보이는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들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가는 중기를 위해 탄탄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어떠한 것에 목적을 두고 이 마음의 여행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피해청소년과 함께 상담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과 신뢰로운 상담관계를 형성하라

- 라포형성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치료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 평가나 사정을 통해 그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파악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라는 자만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더 알아가기 원한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
- 그들이 경험한 고통과 현재의 정서, 행동적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즉 성폭력 '생존자'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원력(resilience)'를 인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각도 라포형성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기억하라.



✧ 심리상담 목표 및 상담계획을 설정하라

- 상담자는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에 대한 평가 및 사정을 통해 파악한 그들의 정서, 행동적 문제의 특성들을 바탕으로 장기목표를 세우고 그에 연관된 단기 목표 및 구체적인 개입전략을 설정하라.
- 목표를 설정할 때는 상담자의 전문적인 견해를 통한 목표뿐만 아니라 피해청소년 스스로가 인식하여 변화되기 원하는 목표를 함께 포함하라.
- 개입전략은 매우 구체적인 부분으로 여러 가지 이완법, 정서투사를 촉진하는 표현 기법 등을 고려하는 측면이다. 이 부분에서는 상담자 개인이 이미 습득하고 있거나 활용에 부담이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의 활용을 계획해 볼 수 있음을 숙지하라.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피해청소년이 나타내는 정서적-행동적 특성에 대한 진술의 예

〈정서적 특성〉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노감 및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 죄책감을 경험한다.

〈행동적 특성〉

- 가해자에 대한 분노감을 표현한다.
- 대인관계 내에서 사소한 일을 가지도고 쉽게 분노폭발을 한다.
- 자기 자신에 대해 수치감과 죄책감으로 사회적 활동을 회피한다.

2. 정서적-행동적 특성의 진술에 따른 장기목표/단기목표 및 개입전략 설정의 예

장기목표	단기목표	개입전략
1. 가해자에 대한 분노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며 적절한 통제감을 갖게 한다.	- 가해자에 대한 분노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보게 한다.	- 빈의자 기법을 활용한다.
	-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과 이에 관련된 부정적 정서가 계속적으로 경험되는 것을 수용하게 하고 분노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게 한다.	-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고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당연하다는 것을 가르쳐서 인식하게 한다. - 분노감정에 강하게 일어날 때 활용할 수 있는 이완법을 훈련한다.
2. 관계 내에서 경험되는 분노 감정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일상생활에서 분노감을 자극하는 원인을 탐색하고 이해하게 한다.	- 일상 생활에서 화가났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공통점을 찾게 한다.
	- 적절한 자기 분노 표현 방식 및 자기주장방법을 습득하게 한다.	- 메시지 등을 통한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을 훈련한다.
3. 성폭력피해에 대한 책임과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인식 및 태도를 변화시킨다.	- 성폭력피해에 관련한 감정을 탐색하고 표현하게 한다.	- 여러 가지 표현예술기법을 활용한다.
	- 왜곡된 수치심과 죄책감이 포함하는 전체적 사고내용을 탐색하여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 계속적으로 감정과 사고에 대해 구체화시키는 질문을 활용한다.
	-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여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자기 자신을 대상화시켜서 장점이나 긍정적인 면에 대해 편지를 써보게 한다.



:: ‘표현예술기법’은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투하고 표현하여 해소시키는 상담기법입니다.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 음악치료, 무용치료 등이 모두 이 표현예술기법치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치료기법은 간단하게 보여도 탄탄한 이론적 배경과 상담기간의 전문적인 훈련을 요하는 기법들이므로 기억하세요.

3) 상담 중기

심리상담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이제 이를 바탕으로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들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변화를 촉진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몫이 피해청소년에게 있기 때문에 당면한 회기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될지는 예상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이야기 안에서, 피해청소년이 설정한 목표와 상담자 자신이 설정한 목표라는 큰 틀을 가지고, 피해청소년의 핵심 문제를 향해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상담자의 몫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담 중기에 상담자가 직접 경험하게 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친족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의 문제들과 그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다루기

● 피해청소년이 자주 신체적, 행동적으로 불안증상을 심하게 나타내요.

- 일단 불안 증상을 이완시키고 불안이 야기되는 구체적인 원인을 탐색하라.
- 불안증상을 완화하는 이완법(심호흡)을 시행한다.
- 불안이 야기된 상황과 원인을 탐색한다.
- 불안이 야기된 상황에 대해 피해청소년이 인식하게 되면, 유사한 상황에서 불안이 야기될 때마다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게 한다.

● 피해청소년이 잠만 자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내요.

- 우울감에 대한 탐색을 하고 최소한으로 일상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 피해청소년이 나타내는 무기력감을 우울감에 관련 시켜 다각적으로 탐색한다.
- 친족성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야기된 우울감을 공감하며 이에 대해 외적으로 표현해볼 수 있도록 한다.
- 우울감 등과 같은 정서를 다룰 때에는 이를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기법적 개입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 정기적으로 상담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상을 규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조금이라도 동기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소일거리나 운동 등의 활동을 탐색하고 시도하게 한다.
- 장기적이고 일관된 개입에도 우울감의 정도에 변화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증상이 심해지면 정신과적 진단을 통해 약물치료를 고려한다.

● 피해청소년이 경직된 태도를 보이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 강하게 억압되어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이완시키고 공감한다.
- 피해청소년이 현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태임을 공감하고 이를 표현해준다.
- 간혹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피해청소년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거나 어깨를 가볍게 주물러주며 이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 내담자와 다른 성의 상담자는 이와 같은 신체접촉의 활용은 선불리 하지 않는다)
- 감정을 어떤 형태로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피해청소년에게 힘이 될 수 있음에 대해 알리고 언제든 동기가 생길 때 상담자를 찾을 수 있음을 알린다.
- 이후 상담자가 피해청소년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경우라면, 피해청소년을 만날 때마다 일관적으로 기분을 물어주고 살핀다.

● 피해청소년이 갑자기 상담자를 비난하면서 화를 내요.

- 분노감정이 억압되어 있음을 인식시킨 후 이를 적절히 표현하여 해소시키게 한다.
- 상담자에 대해 무엇 때문에 화가 난 것임을 침착하게 묻고 들어준다.
- 피해청소년이 어떤 이유를 말하든, 혹은 이유를 말하지 못하든 것처럼 화를 낼 수 있음에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 분노를 수용해 준다.
- 분노감정이 친족성폭력 경험 자체나 가해자에 대한 분노감정이 전이된 것일 수 있음을 직면시키고 이처럼 분노감정이 일어나는 또 다른 상황에 대해 탐색해보게 한다.
- 친족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분노감을 표현예술적 기법이나 빈의자 기법 등으로 표현해보게 한다.
- 일상생활에서 분노감이 경험될 때마다 이후 이에 대한 상황, 자신의 분노 행동 등을 써보게 한다.
- 분노폭발로 인해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이 또 다시 느끼게 되었던 죄책감이나 자괴감 등의 감정 또한 탐색하여 표현하게 하고 이를 공감해 준다.
- 분노가 폭발되기 전에 적절한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모색한다.
-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인식시키고 분노조절에 대한 작은 성공에도 크게 지지한다.

● 피해청소년이 자주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면 원인이 없어요.

- 심리적 불안감이 신체적 증상으로 전환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고 이를 통찰하게 한다.
- 일단 피해청소년이 호소하는 신체적 고통에 대해 수용해주고 부드러운 스킨십이나 이완법 등을 통해서 진정시켜 준다.
- 얼마나 자주 어떻게 아프지에 대해서 탐색한다.
- 신체적 증상이 단순히 신체적 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친족성폭력 피해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 피해청소년이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특정한 상황이 있는지를 탐색하게 한다.
- 피해청소년이 신체적 증상을 통해 어떤 이차적 이득을 누리려고 할 때, 이를 직면시켜야 하되 매우 공감적인 태도로 다룬다.
- 부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의사소통할 수밖에 없는 피해청소년을 공감하고,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피해청소년 자신을 힘들게 했음에 대해 공감해 준다.
- 친족성폭력피해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 감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표현해볼 수 있게 한다.
- 감정이나 욕구 등을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지지하고 연습하게 한다.



-아이고 수박아~

● 피해청소년이 자해를 해요.

- 자해를 하게 하는 원인을 탐색하고, 억압된 부정적 감정에 대해 보다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
- 처음 자해를 시도하게 된 때와 그 이유에 대해 탐색한다.
- 최근 얼마나 자주 자해를 했는지에 대해 탐색한다.
- 자해를 시도하게 되는 때의 상황적, 정서적 상태를 탐색하고, 자해 중이나 자해 후에 나타나는 정서와 사고를 탐색한다.
- 자해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 인식하게 한다.
- 친족성폭력과 관련해 자해를 유발시키는 감정이나 기억이 있는지 탐색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게 한다.
- 자해 충동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이를 알리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한다.
- 자해 충동이 일어날 때 이를 이완시키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연습해본다.
- 자해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피해청소년을 지지하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얻게 된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게 하여 강화시킨다.
- 자해가 계속해서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할 때 정신과적 도움을 받아야 함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해 약속한다.

● 피해청소년이 자살시도를 해요.

- 먼저 피해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안위를 확인하고 보듬어 준다.
- 연기성 자살시도인 경우 이를 자극하는 원인을 탐색하고, 이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한다.
- 자살을 시도하게 된 원인을 묻고 어떤 경우든 피해청소년이 매우 힘들었을 것을 공감한다.
- 자살이 때때로 타인에 대해 무엇인가를 강하게 표현하고 알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극단적 의사소통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이에 관련해 직면시켜 탐색하게 한다.
- 자살시도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인식하게 한다.
- 경우에 따라 피해청소년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타인을 통해 피해청소년의 연기성 자살시도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피드백(feedback) 받게 한다.
-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었느냐의 욕구를 분명히 알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한다.
- 자살충동이 일어날 때 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자신의 이완을 도울 수 있는 대상을 함께 찾아본다.
- 이러한 자살시도가 다시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할 때 정신과적 도움을 받아야 함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해 약속한다.
- 실제로 심각한 자살시도인 경우에는 우울증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줌으로 정신과적 도움을 병행한다.
- 자살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에 대해 공감하며 더욱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함을 알린다.
- 실질적으로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더 전문적인 심리치료적 개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고 적절히 연계한다.
- 협력 기관과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며 기관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 실질적으로 심각한 자살시도는 피해청소년이 이에 대한 가능성을 주변에 의미있는 타인에게 알리기는 하나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살시도도 매우 계획적으로, 또한 타인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연기성 자살시도는 보통 생명의 지장이 없는 자해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시도를 하는 피해청소년은 자신의 자살시도를 타인에게 쉽게 알려지게 하거나 이를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 알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의 자살시도든지 이미 피해청소년의 심리적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니 정신과적 치료 보다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연계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청소년이 자꾸만 기관의 규칙을 어기며 행동적 문제를 일으켜요.**

- 문제 행동이 단순히 충동적인 측면에 있는지 여러 가지 다른 정서적 어려움에 있는 것인지 탐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택과 책임의 부분이 피해청소년에게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 먼저 피해청소년이 규칙을 지키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기관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피해청소년에게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음에 대해 공감해 준다.
- 규칙을 어기는것이 친족성폭력과 관련해 자신에게 해결되지 못한 분노 때문에 기관 상담자나 실무자에게 전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이를 직면시켜 탐색한다.
- 기관이 정하고 있는 규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벌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따르게 하거나 스스로 정하여 지켜보게 한다.
- 위의 중재에도 계속적으로 규칙을 어길 때에는 기관의 규칙을 계속해서 지키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현실적 불이익을 다시 분명하게 인식시켜야한다.
- 피해청소년이 기관에 있어야 하는 긍정적 의미를 스스로 탐색하여 인식하게 하고, 이를 위해 스스로를 조절하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지지하고 격려한다.
- 규칙수용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할 때, 이에 관련한 심리적 요인을 충분히 다루면서 몇 번의 기회를 제공하되 그러한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선택의 책임이 피해청소년에게 있음을 알리고 규정을 시행한다.
- 불가피하게 퇴소 등의 강한 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매우 유감스러우나 기관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퇴소가 불가피한 것임을 알리며 피해청소년을 비난하기 보다는 규칙수용의 중요성과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의 결과에만 초점을 두고 상기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피해청소년이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함께 모색해주되 다른 기관에서는 현명하고 좋은 선택을 해야 함을 인식시키고 지지한다.

4) 상담 종결기

앞서 상담 초기에 설정했던 장-단기 상담목표들을 점검하면서 종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종결기에는 심리상담의 장기목표를 기준으로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들이 보이고 있는 변화에 대해 실질적으로 탐색하게 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이에 대해 강화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상담자와의 관계에서도 적절하게 독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결기에는 심리적 문제 외에 보다 현실적인 이슈들을 자주 다루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진로 문제나 독립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이슈들에도 정서적인 부분이 관여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로나 독립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다루면서 그에 따라오는 감정들을 충분히 다루어야 합니다.



다음을 점검하라

- ★ 장기목표를 기준할 때 상담자와 피해청소년 각각이 상담목표에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인식하는지 탐색한다.
- ★ 둘의 인식 정도가 다르다면 그 이유를 탐색하고 피해청소년이 상담목표에 도달했다고 여기기 위해 더 변화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 ★ 피해청소년의 변화에 대해 그들 자신이 가진 '복원력(resilience)'에 연관시켜 지지하고 강화한다.
- ★ 심리상담 종결을 앞두고 경험되는 다양한 감정을 탐색하고 표현하게 한다.
- ★ 원가족으로의 복귀 욕구와 가능성을 함께 탐색한다.
- ★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이 불가피한 경우 이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불안이나 걱정 등을 인식하여 표현하게 한다.
- ★ 피해청소년의 독립을 돕기 위해 상담자가 도울 수 있는 일들과 피해청소년 스스로가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게 한다.
- ★ 필요한 경우 진로의 문제에 더 구체적인 초점을 맞춘 진로상담적 개입을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피해청소년의 욕구를 탐색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행한다.



그들과의 마음 여행은 성공적이었는가 -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과의 상담을 돌아보며

대부분의 심리상담이 그러하듯, 상담자가 생각하기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상담과 그렇지 못한 상담이 존재합니다. 이에 때때로 상담자가 자신의 심리상담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에 크고 작은 좌절이나 후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심리상담의 경우, 피해청소년이 가진 특수한 상황적 문제들 때문에 심리상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변수적 변수들이 많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심리상담의 목표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함께 용기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마음의 여행은 실패한 것일까요?. 단언하건데, 상담자가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상담했다는 경험을 쉽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이 한 회기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들을 강한 생존자로 인식하고 이들을 가슴을 끌어안아 공감하려고 했다면 그것이 충분히 상담적 가치를 발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담적 만남이 피해청소년의 가슴에 긍정적 경험으로 남을 수 있다면, 이후 적절한 때에 그들은 심리치료적 상담에 대해 다시 동기를 갖고 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리상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접으면서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상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깊은 상처에 대해서 보다 진지한 태도를 갖고 긴장해야 하겠지만, 그들이 가진 회복력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고 건강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한 다양한 양가감정과 그들과 관계된 가족들의 다양한 태도나 감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든 그것은 그들이 뿌리 깊은 문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습득한 나름대로의 방어체계이며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here and now 에 충실하여 상담 회기의 순간 마다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을 진실 되게 만나되 상담자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줄 수 없다는 한계점도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깊은 공감은 중요하나 너무 감성적이서는 안 됩니다.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을 위해 현실적으로 다루고 고려해야 할 측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리나 그들의 독립에 문제 등에 있어서는 상담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성적이고 분명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IV.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백서

1. 쉼터지원
2. 학교지원
3. 의료지원
4. 법적지원
5. 퇴소 및 연계지원

48	93	19	94	49	43	52	20	59	9
14	51	100	66	15	31	69	10	25	44
92	34	12	95	26	91	58	39	90	18
65	77	33	89	63	38	74	24	64	50
17	88	27	53	13	73	5	68	60	16
99	40	62	79	55	72	11	54	30	32
23	97	71	4	96	29	80	37	3	45
47	7	42	84	35	83	2	46	98	61
86	76	36	6	78	70	82	1	69	28
21	81	87	57	85	22	75	41	56	8



1. 쉼터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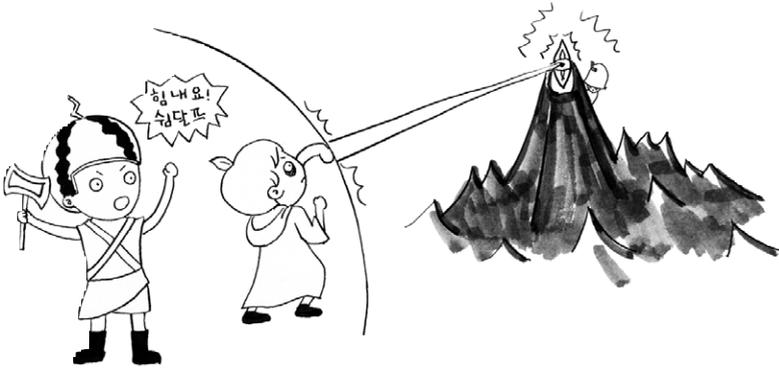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은 크게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출청소년 지원기관인「청소년쉼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청소년의 보호기간에 따라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나뉘어 집니다.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안정을 취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보호자와의 연락여부는 피해청소년과 협의 합니다.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에게 청소년쉼터는 가출이라는 현재의 결과 이전에 “가해자로부터 분리”라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쉼터의 기본적인 서비스요소인 보호·가정복귀 지원·사회복귀 지원 중 가정복귀 지원에서 차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을 인지해야 합니다.

청소년쉼터는 쉼터에 입소할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입소자가 원치 않을 경우와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친족성폭력 또한 피해청소년, 가해자와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와 연락하는 것은 가해자로부터의 재피해에 노출되게 하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 혹은 가해자, 원가족의 구성원과 연락하고, 만나고, 위치를 노출하는 것에 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주지인 쉼터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청소년쉼터는 많은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가 외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성 폭력의 경우 가해자에게 거주지의 위치나 전화번호가 노출될 경우 가해자의 위협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피해청소년 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만나야 하는 필요가 있거나, 피해청소년이 원하는 시점까지는 철저히 비밀보안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는 발신자제한이 되도록 조치한 후 사용합니다.

차단방법_집전화로 걸 경우 : 169 + 상대방번호 / 휴대폰으로 걸 경우 : *23# + 상대방번호

※ 가해자가 피해청소년을 회유, 공격하는 이야기는 시간을 두고 전달합니다.

피해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원가족, 친구, 가해자 측과 연락이 닿게 될 경우 자신이나 원가족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청소년을 집에 돌아오게 하거나, 성폭력피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막기 위해 가해자는 크게 두 가지 패턴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는 "엄마가 아프다", "가해자가 자살을 시도했다" 등과 같은 이야기로 피해청소년을 회유하려 하거나, "피해청소년이 남자와 살림을 차려 가출했다"와 같이 헛소문을 퍼뜨려서 피해청소년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피해청소년이 일일이 반박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이지만, 내용이 전달되는 것 역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청소년이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여러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원가족에 대한 여러 소문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피해청소년이 생활의 안정을 찾고 난 후 필요할 경우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학교지원

청소년쉼터의 교육지원은 학업 욕구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단기쉼터 입소기간은 물론 퇴소 후, 중장기쉼터로 연계된 후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학교생활지도, 학습지도, 대안학교 연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생활을 잘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복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와 학교적응을 지원하고, 대안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입학을 돕고 있습니다.

※ 가해자로부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가해자 모르게 전학해야 합니다.

여기서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이 학업 욕구가 있을 경우, 다니던 학교로의 복학 혹은 전학을 결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학교생활 적응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학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가해자로부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면 전학이 불가피합니다.

일반적인 전학절차는 등분상 주소지 이전으로 이루어지고 법적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의 경우 주소지 이전 없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학교장추천' 전학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학교장추천 전학절차는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이 성폭력피해와 무관하게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한 것이며, 가해자가 피해청소년의 학교, 쉼터로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의 학교장추천 전학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고민이 생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친권자가 있는데”, “법적으로 가해자로 판명이 된 것도 아닌데” 심터가 보호자로서 전학을 해도 되는가? 물론 “해야합니다” 현행법인 가정폭력특별법에서는 주소지 이전 없이 학교장추천에 의한 전학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추천 전학 시 심터는 피해청소년이 심터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학교 담임교사, 학교장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학교장추천 전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다니던 학교측과 협조하는 부분입니다. 다니던 학교에 전학 가는 학교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가해자측이 행패를 부릴 것이 두려워 비협조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자는 학교측에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에 대한 상황을 알리고, 전학처리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학교장 추천 전학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학지를 가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됨을 고지해야 합니다.

※ 되도록 적은 사람이 피해사실을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학처리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다니던 학교의 담임교사와 학교장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임교사와 학교장 외에 피해청소년의 피해사실이 다른 학교관계자들에게 최대한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청소년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간혹 교사가 친절을 베푸는 명목으로 심터생활, 성폭력피해에 관련된 이야기를 질문하는 경우 피해청소년들은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담임교사와 학교장 외에 다른 교사들이 피해청소년의 개인적 상황에 대해서 함구하도록 담임교사에게 부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한 시설에서 여러 명의 등학생이 생기는 경우에는 분산 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청에서 배정시 지역에서 가까운 학교에 분산 배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정학교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면도 있지만 보통은 같은 시설에서, 같이 학교를 다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생활자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 혹은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가 좁아지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없으므로 생활공간과 분리되는 학교공간이 생활자들 서로에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 피해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이 전학을 하게 되면 전학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어디서 살았고, 어떤 학교에 다녔고, 왜 전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피해청소년에게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 충분히 이야기 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여 청소년들이 다른 학교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인맥이 퍼져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게 전학했는데 전 학교에 피해청소년의 소문이 났고, 이를 전학한 학교의 친구들이 알게 되면서 소문이 따라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먼 지역, 잘 모르는 학교, 친척집 거주와 같은 일반적인 이유를 대거나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피해청소년과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융통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 초등학교

다니던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직인(분교일 경우 교감 추천서), 담임의견서/담임 서명, 재학증명서, 시설 보호증명서 → 가까운 지역 교육청 제출 → 교육청에서 해당 초등학교에 배정 통지서 발송 → 배정 받은 학교 방문 → 담임교사, 학교장 면담

● 중학교

다니던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직인(분교일 경우 교감 추천서), 담임의견서/담임 서명, 재학증명서, 시설 보호증명서/법인등록증 → 가까운 지역 교육청 제출 → 교육청에서 해당 중학교에 배정 통지서 발송 → 배정 받은 학교 방문 → 담임교사, 학교장 면담

● 고등학교

학교장추천전입학배정확인서, 다니던 학교의 전입학배정원서, 시설 보호증명서, 담임의견서/학교장 직인 → 각지역 교육청 제출 → 교육청에서 해당 고등학교에 배정 통지서 발송 → 배정 받은 학교 방문 → 담임교사, 학교장 면담

일반계 고등학교 → 일반계 고등학교 : 서울특별시소재

- 동일계열간 전입학 : 3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
(예시) 일반계고등학교 → 일반계고등학교
- 계열을 달리하는 경우의 전·편입학 : 2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
(예시) 특수목적고등학교 → 일반계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 → 일반계고등학교 : 타· 시도소재

- 동일계열간 전· 편입학 : 3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
(예시) 일반계고등학교 → 일반계고등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을 달리하는 경우의 전·편입학 : 2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
(예시) 특수목적고등학교 →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 전문계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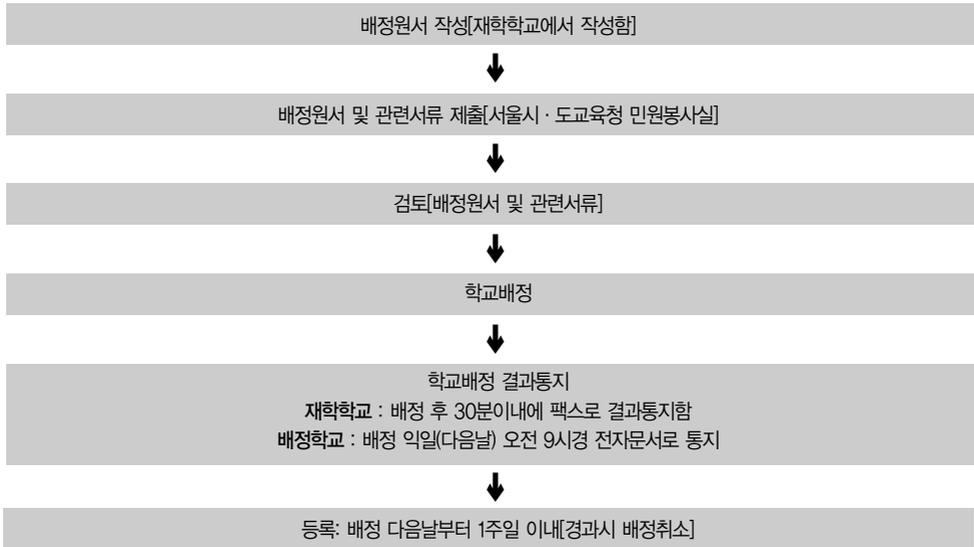
- 동일계열 : 3학년 1학기까지
- 계열을 달리하는 경우 : 2학년 1학기까지
- 전·편입학 하고자 하는 전문계고등학교로 직접 문의하여 구비서류 및 해당 절차에 의함.
(※ 서울시교육청에서 전문계고등학교를 배정하지 않음)

전문계고등학교 → 일반계고등학교 : 서울특별시소재

- 1학년 : 2학기초(9월초)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실시
- 2학년 : 1학기초(3월초)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실시

전문계고등학교 → 일반계고등학교 : 타· 시도소재

- 2학년 1학기 까지 전입학 할 수 있음



:: 교육청 담당자와 통화 후 방문하세요!

가전학 처리 매뉴얼은 서울지역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일 경우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방문 전 해당 교육청 담당자와 통화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되어야 할 서류가 바뀌기도 하고 각 교육청 별로 방침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 학교 배정이 끝나고 나면?

급식비, 학비지원 요청, 교복, 특활부서, 구두, 교과서 구입등과 같은 실질적인 일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면 무료급식, 학비지원 정도는 받을 수 있으며 교복과 교과서는 학교에 비치된 여분정도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3. 의료지원

성폭력피해에 있어 의료적 지원은 시급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가해자 식별의 중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인 증거는 48시간 안에 진찰을 받아야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 소멸되기 때문에 적시에 의료진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쉼터의 경우 긴급히 의료적 지원을 요하는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이 입소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성폭력피해자지원 전문기관에 연계되는 것이 일반적인 지원흐름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피해청소년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옮기기를 꺼려하는 경우 초기의 의료적 지원만 이루어진다면 청소년쉼터 내에서 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의료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료지원은 피해가 있고 난 후 시간의 경과정도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직후 긴급지도할 입소자와 피해이후 시간이 경과된 입소자를 구별하여 살펴봅니다.



※ 성폭력피해 직후라면 ONE-STOP지원센터로 연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피해 후의 의료적 지원(산부인과를 포함한 다른 외상관련 진료)은 피해자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것과 함께 이후 재판을 하게 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증거를 채취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는 당장에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별개로 이후 고소를 하게 됐을 때는 확보가 불가능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증거확보는 고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는 것이지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를 하고자할 때는 현실적으로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때는 24시간 통합지원이 가능한 ONE-STOP지원센터로 연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절대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고 바로 ONE-STOP 지원센터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옷을 갈아입은 상태라면 바람이 잘 통하는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옷을 넣어 보관합니다. 센터에서는 입, 항문, 질, 손톱 밑 등의 조사, 머리카락 수거, 음모 빗질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런 증거물은 가해자의 정액, 혈액형, 머리카락, 피부세포를 알아내고 가해자를 찾거나 증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국 ONE-STOP 지원센터 부처 참조)

※ 성폭력피해 이후 시간이 경과했다면 점검의 의미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친족성폭력피해를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 부인과 진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피해이후 시간이 오래 경과한 경우 부인과 진료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이후 부인과 진료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경우 성병 감염여부, 부인과 상처에 대한 두려움 등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산부인과적, 외과적, 정신과적 치료비, 심리상담비 및 진단서 발급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 해마다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액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비는 2007년 기준으로 1인당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경우는 정부, 의료기관, 상담소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원할 경우 가까운 성폭력상담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면접상담 후 의료비 영수증 원본과 입금 가능한 은행 계좌(본인 계좌가 아닌 경우,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를 직접 혹은 우편으로 보내면 각 상담소에서 영수증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 산부인과를 방문하기 전에 진료에 관한 정보 나눔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성경험 유무와는 상관없이 부인과의 진찰과정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인과의 진찰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경험이 생각나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산부인과 의사가 남자일 경우는 거부감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인과 진료 전에 피해청소년과 함께 왜 진료를 받고, 어떠한 진료를 받고, 어떠한 의사를 만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진료를 위해 의사와 지원자가 피해청소년의 피해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에게 왜 굳이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는지에 대해 피해청소년이 당황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학교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학교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가정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등에게 무료로 24시간 의료, 상담, 수사에 필요한 진술 및 증거채취, 법률지원, NGO연계 등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을 합니다. 현재 전국 15개소에 ONE-STOP 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의료지원

센터 전담 산부인과 전문의, 응급의학과 24시간 진료, 영상진료 및 증거자료 제공

★ 상담지원

사회복지사 상주, 피해자 안정실에서 조기안정 도모, NGO·쉼터 등과의 연계 적극지원

★ 수사지원

- 진술녹화 및 상담전문 여성 경찰관 24시간 근무
- 의료진료차 내방시, 진술녹화 후 경찰서에서 활용
- 피해자 조사와 동시에 112·117 및 각 지방청 여경기동수사대와 연계, 신속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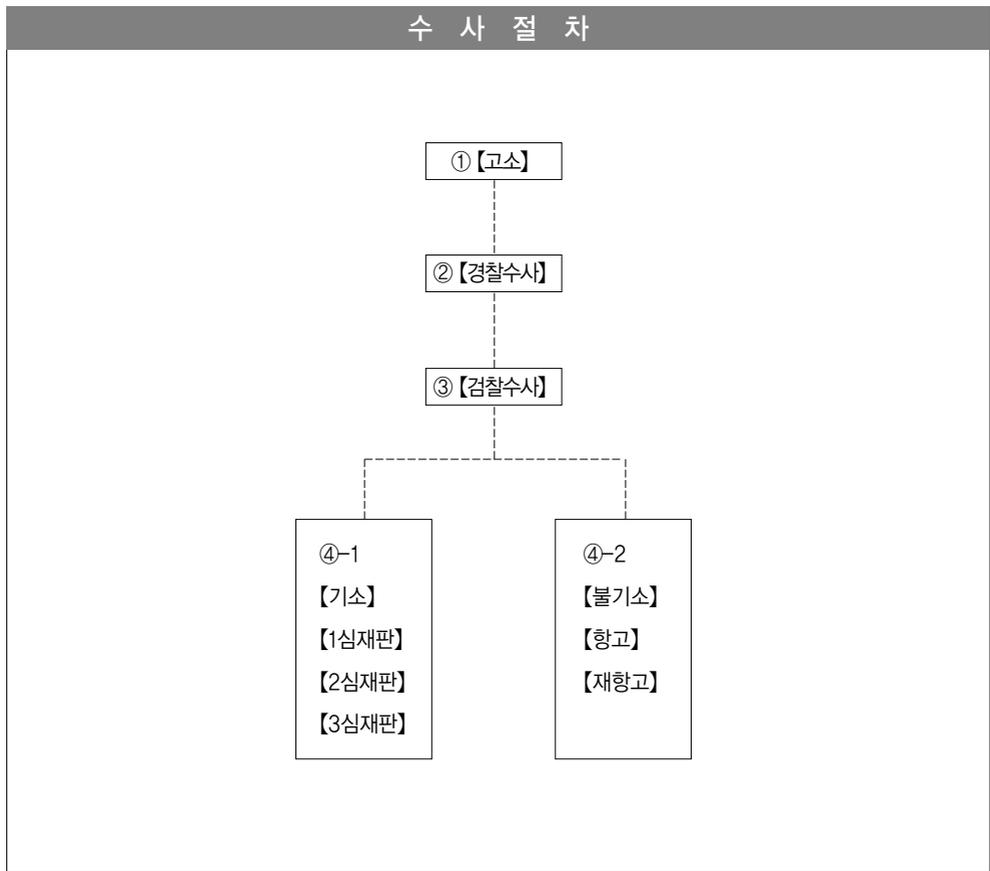
★ 법률지원

학교/여성폭력 전문 변호사· 무료 법률지원단(50명) 구성, 민·형사소송 절차 등 법률 상담

4. 법적지원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에게 법적지원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함으로써 시작되며, 고소이후 수사절차를 살펴보면 아래 같습니다. 고소이후 판결이 나기까지의 과정을 위와 같이 살펴보면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듯 보이지만 고소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청소년이 고소를 한 이후는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청소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자가 조력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절차와 권리에 대해 살펴봅시다.



고 소	- 경찰에 고소장 접수: 피해자·가해자·사건발생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
경찰수사	- 고소인 조사: 고소장 접수 후 1-2개월 안에 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 - 조사 후 진술조서에 서명: 진술 내용이 바르게 전달되었는지 확인, 정정요구 - 경찰이 피의자(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증거수집 - 피의자가 부인할 경우 목격자 및 증인 소환 조사 - 경우에 따라 차이 있지만 대략 1-3개월 내에 종료 - 수사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 검찰이 경찰의 요청에 따라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
검찰수사	-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필요에 따라 보강수사 후 기소여부 결정 - 보강수사 시 보통 고소인과 피의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 - 경우에 따라 차이 있지만 대략 1-3개월 내에 종료
기 소	- 검사가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
불기소	- 무혐의 :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을 경우 - 기소중지 : 피의자나 목격자가 출석하지 않아 혐의 유·무를 밝힐 수 없는 경우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매우 경미한 경우
항 고	- 불기소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고소인은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수사한 검사가 속해있는 지방검찰청을 통해 관할 고등검찰청에게 재수사를 요청
재항고	- 항고가 기각되면 역시 1개월 안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헌법소원	- 재항고기각 통지를 받고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신청



※ 기억을 정리할 수 있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고소준비의 시작입니다.

고소하기 전 친족성폭력 피해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해 봅니다. 이는 피해청소년이 자신의 기억을 점검해 봄으로써 경찰·검찰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피해상황은 육하 원칙에 의거하며 당시의 느낌이나 생각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원자는 이를 기록으로 보 관하며 상담과정에서 진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질문을 하거나 상담한 내용을 녹음 혹은 상담일지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은 사건에 대한 긴장감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소를 결심하였지만 사건에 대한 법적인 확신이 없을 때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거리를 두고 본인의 사건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고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상담하기 때문에 방어전략을 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은 각 지역의 성폭력상담소에서 가능하며, 상담소와 연계된 변호사에게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여성경찰관 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236개(2007년 10월 기준)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는 여성폭력전담 조사관이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소시 여성청소년계로 하시거나 여성경찰에게 조사받고 싶은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여성조사관의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청소년계 경우는 여성경찰을 만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 수사과정·재판과정에서 신뢰 있는 자와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검찰 수사나 재판과정 시 피해청소년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부모, 상담원, 변호사, 그 외 친밀한 관계를 맺는 성인)이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동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할 경우 증인신문에 있어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사, 판사에게 구두로 요청할 수 있으며 보통은 판사가 미리 비공개를 판단하여 다른 방청객들을 법정에서 나가게 합니다.



※ 고소기간을 파악하고, 고소기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와는 별개로 고소기간이 있는데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고소기간은 1년입니다(청소년 성폭력은 2년). 하지만 성폭력피해 직후 피해사실이 알려지기 힘든 친족성폭력피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일정 형사법상 범죄행위 혹은 민사법상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각 사안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기간을 두고 범죄나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그 정해진 기간 만료일까지 소를 제기(형사사건의 경우 조사 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관할법원에 기소하거나, 민사사건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배상 등 민사책임이 면제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강간, 강제추행일 경우 고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일어난 사건은 10년으로 적용됨)

✘ 친권자에 의한 친족성폭력이 있을 경우 친권 상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그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친권자에 의한 친족성폭력이 있을 때에도 그러한 자에게 친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친권제한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등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친족 또는 검사가 법원에 해당 가해자의 친권 상실을 선고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은 정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친권상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친족성폭력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개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은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이 친족성폭력에 따른 충격 등을 치유하기 위하여 개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거나, 성폭력피해가 있었던 여태까지의 삶을 접고 새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두거나, 가해자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찾을 것을 우려하여 개명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불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체화 하는 수단으로 기능함으로 피해청소년이 개명의사가 있다면 이를 중요히 다루어야 합니다.

〈표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

제·개정	[제정] 1994.1.5	[개정] 1997.8.22	[개정] 2003.12.11	[개정] 2006. 10. 27
법률	법률 제04702호	법률 제05343호	법률 제06995호	법률 제8059호
개정 취지	최근 각종 성폭력범죄가 점차 흉포화·집단화·지능화·저연령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최근 물의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방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며,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또한 근친간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빈발하는 등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해당 범죄 처벌 강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경우 진술과정을 영상물에 의하여 녹화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있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존속 등 연장의 친족에 의해 강간·추행과 신체장애자에 대한 추행을 처벌하도록 하고 이를 모두 비친고죄로 함. ②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처벌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로 함.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할 때에는 보호감호대상범죄로 취급. ④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분과 사생활비밀을 보장 및 비공개 재판 가능 ⑤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중처벌대상에 야간주거침입절도등의 미수범에 의한 강간과 주거침입강간 추가 ② 친족성폭력 가중처벌함에 있어서 친족 범위 확대. ③ 장애인의 범위를 신체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장애까지 확대 ④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의 죄 가중처벌, 비친고죄 ⑤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 동석 규정 신설. ⑥ 18세미만의 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가 신고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②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피해자를 신문 또는 조사하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함(법 제22조의3 제3항 신설). ③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그 피해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거보전의 청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행위의 처벌 ②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행위 처벌 ③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 상향조정 및 유통배포 행위 처벌 ④ 교도관 및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의 가해를 친고죄에서 제외 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일반인 확대 ⑥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의 도입 ⑦진술녹화제의 적용대상 13세에서 16세로 확대

이 표를 보면, 전체 9번의 개정중 내용상 큰 변화를 보인 3차에 걸친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방향은 크게 장애인·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7년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가중처벌 강화와 일부 친고죄 폐지, 보호·감독관에 대한 책임 강화 등입니다. 2003년의 주요 개정 내용은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 피해자를 수사할 때 지켜야할 수사관들의 태도에 대한 규정안이 중심입니다. 2007년의 주요 개정 내용은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유사 강간을 인정하여 아동 성폭력의 범주를 확대하고, 장애인 보호 시설장 등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표 2〉 청소년 성보호법상 성폭력에 관련된 범죄

죄명	범죄구성요건	행위자	대상	형	비고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8조)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	남, 여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남, 여	-	7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	남, 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	남, 여	청소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 강간 등 (제10조)	강간	남	여자청소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친고죄
	강제추행	남, 여	청소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	청소년	위와 같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	-	여자청소년 (간음), 청소년(추행)	위와 같음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2007), 「법률지침서」, 한국성폭력상담소

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을 위한 규제 조치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중심으로

첫째,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등록대상을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확대하고 기간은 10년으로 연장.

둘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대상과 열람권자 확대 : 기존의 열람대상은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로 제한되었으나 13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의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이 높은 자로 확대

아울러 이들의 신상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등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권자는 성범죄자의 주소(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 장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셋째,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에 취업 제한

넷째,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친고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하여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

다섯째,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여섯째, 친권상실 신고 및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 가능

5. 퇴소 및 연계지원

청소년쉼터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다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크게 집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장기쉼터로 연계되는데, 이때 피해청소년이 이후의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포터즈가 되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기관으로의 연계는 기관담당자와의 협조만 유기적으로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가해자와 다시 거주하게 될 경우 사후관리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자원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원가족이 있는 집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가해자와의 동거는 자연스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지원자의 사후개입에 관해 살펴봅니다.

❖ 피해청소년이 자신을 비난했던 가족, 가해자와 살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설을 퇴소한 이후의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이 시설을 퇴소한 이후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다시 살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과 다르게 자립이 힘든 청소년의 경우 다시 원가족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버젓이 살고 있는 집에 다시 들어가는 피해청소년을 쉬 이해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갈 수 있는 다른 시설도 있고, 그룹홈도 있고, 고시원도 있고, 어느 것도 가해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청소년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는 단순히 살 집, 필요한 용돈 이외에 다른 숨겨진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를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와 함께 살고있는 있는 몇몇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사회에서 끊임없이 유폐되는 정상가족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자신이 정상가족으로 포장되도록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낙인을 정체화 하게 합니다. 또한 더 이상의 시설생활은 죽기보다 싫다는 생각과 함께 공동체 생활에 대한 불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원가족으로부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비난이나 원망을 받은 경우 자신이 피해자로서 증명받고 싶은 마음, 가족들이 진실을 알고 자신에게 돌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해자와의 동거가 주는 불편함과 불안, 두려움을 감당하고 집으로 복귀하게 되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피해청소년이 간절히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경우, 단순히 가해자가 재가해를 할 것이 우려되어서 피해청소년의 의지를 꺾기는 힘든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이때 피해청소년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후의 지원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청소년이 언제나 SOS 할 수 있는 지원자가 있음을 상기토록 합니다.

피해청소년이 집으로 복귀한 후 가장 눈여겨 볼 것은 가해자로부터의 재피해를 어떻게 견뎌 나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가해자가 실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가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피해청소년이 만약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긴급할 경우에 어떻게 누구에게 연락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재피해가 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쉼터 선생님께 연락하여 쉼터로 탈출한다 등등의 세부적인 계획이 좋습니다.

※ 가해자에게 엄중처벌의 강력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와 쉼터 지원자가 대면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가해자가 피해청소년을 집으로 데려가기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 피해청소년이 마음을 돌리기도 하고, 가해자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때 가해자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연계하여 가해자에게 정기적인 교육 혹은 상담을 할 것을 약속하거나 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피해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엄중경고하고 피해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지원자와 연락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기관에 연계할 경우 새로운 담당자와 세부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잘 아는 얘기라 생각되지만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의 다양한 가족관계와 상황들이 놓여있기에 특히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기관연계시 의뢰절차를 통해 상담일지와 상황에 대한 공유가 있지만 특히 가해자, 원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방침을 확실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상담자가 바뀌고, 기관이 바뀌면서 피해청소년이 또다시 성폭력피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상담자의 세심한 연계지원이 요구됩니다.

슬기(별칭)의 입소 후 3개월간 지원과정 살펴보기

슬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친부에 의한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으며 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였으나 어머니는 무관심 했습니다. 지역 상담소의 도움으로 열림터에 연계되었고 현재 타 장기쉼터에서 씩씩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슬기는 열림터에서 2007.07.01 - 2008.01.01 까지 7개월간 생활하였습니다. 이 중 아래 초기지원은 표와 같이 3개월간(2007.09.30)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실제지원에서 유용하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헛갈리는 미성년자 연령 규정?

형사소송법상 형사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형법상 미성년자 : 만 20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 만 19세 미만

::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할 때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접속하여 <나의 사건 검색> 메뉴에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재판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관한 전체적인 과정을 한 눈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과 관련된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보호법
형법 등이 있습니다. 형법은 일반법이고 성폭력특별법은 특별법이므로
우선적으로 성폭력특별법의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위의 법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표 3〉 슬기의 지원과정

차수	날일	내담자	상담내용	참고
01차	07.06.29	청소년상담소	입소의뢰	
02차	07.07.01	청소년상담소	입소결정, 청소년상담소 상담일지 송부받음	
03차	07.07.02	슬기	입소상담, 피해사실 관련상담(녹취)	
04차	07.07.03	전 담임교사	학교장추천 전학위한 서류요청	
05차	07.07.05	전 담임교사	출결처리위한 시설보호증명서 요청/발송	
06차	07.07.07	교육청장학사	동부교육청방문 학교장추천 전학조치	
07차	07.07.08	현 담임교사	급식비, 학비, 교과서 구입비 지원논의	
08차	07.07.10	현 담임교사	학비면제, 보호증명서 서류요청/발송	
09차	07.07.11	전 담임교사	가해자가 가출로 슬기 신고, 학교에 찾아온 것 전달	
10차	07.07.15	슬기	학교성적, 학습태도, 교우관계 관련	
11차	07.07.17	슬기	상담지원_산부인과(염증 없고 부분파열), 내과	
12차	07.07.20	클리닉	의료지원_상담클리닉 상담	
13차	07.07.25	슬기	엄마, 아빠에게 편지쓰기	
14차	07.08.07	클리닉, 슬기	의료지원_상담클리닉 결과상담	
15차	07.08.09	친모	남편의 가해사실, 법적처벌사항 통보, 이후 과정 논의	
16차	07.08.10	친모	방 얻어 따로 살게 해주겠다며 안부전함	
17차	07.08.12	친모	남편의 가해사실 부인, 슬기 만나고 싶다함	
18차	07.08.13	슬기	모와의 통화내용 전달, 고소에 대한 논의	
19차	07.08.15	클리닉, 슬기	클리닉개별상담 시작_상담회기 결정	
20차	07.08.20	슬기	어린시절, 가족에 관한 기억	
21차	07.08.22	슬기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으로 힘든 심경토로,	
22차	07.08.25	슬기	고소의지 밝힘, 클리닉 심리상담	
23차	07.08.26	슬기, 친모	모에게 부에대한 고소의지 밝힘, 전화하지 말 것 당부	
24차	07.08.30	슬기	교우관계, 학습시간의 어려움_진도, 내용	
25차	07.09.05	슬기	동생에 대한 그리움, 고교진학의 어려움 호소	
26차	07.09.07	슬기	법률상담(변호사), 고소장 검토	
27차	07.09.08	슬기, 형사	고소장 접수 및 경찰조사	
28차	07.09.15	슬기, 모	모 고소취하 및 탄원서 요구 전화	
29차	07.09.20	슬기	고소 후 혼란, 정리되는 마음, 모에 대한 서운함	
30차	07.09.25	슬기, 형사	검찰로 송치 통보, 경과 논의	

나머지 이야기와 부록

원고후기

지원을 위한 연계망

학교장추천서양식

처음에 이 일의 제의를 받았을 때는 '그저 너무 좋은 일이니 기쁜 마음으로 하자' 라는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고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좋은 일이라는 한데, 장난이 아니네..' 라는 마음,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와 공유하기 위해 글로 쓰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 어느 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장시간 원고를 써내는 저를 보며 저희 어머니가 '너 괜찮냐?' 하셨죠... ㅎㅎ. - 하지만 어느새 지금은 그 같은 시간을 지나서 원고후기를 속 시원한 마음으로 쓰고 있답니다! 다시 처음에 가졌던 기뻐던 마음과 더불어 보람을 담은 감사의 마음까지.. 뭔가 도움을 주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저에게 역시 좋은 선물로 되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심리치료의 과정을 일종의 마음 여행으로 비유했지만, 이 원고를 쓰는 과정 자체도 저에게는 하나의 마음 여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 한 치료자로서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을 만나왔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여행, 그리고 그간 제가 만났던 아이들...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그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어보는 여행이었지요.

내가 그저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을 글로 실체화 시켜서 내놓는 과정은 나에게도 매우 유익한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사이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을 더 명확히 하거나, 혹은 실상 명확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유익은 다른 상담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제 자신에게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글을 쓰면서 그들을 처음 만났던 초심의 때로 돌아가는 겸손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났던 보석 같은 아이들.



나름대로 긍정적인 심리치료 과정을 완수한 아이들도 있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로 떨어져 나가버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새삼 궁금해지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좋은 힘을 발휘하여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기를 축복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피해청소년 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나 다른 가족들을 위한 필요한 심리적 치료의 도움도 제공될 수 있는 제도와 통로들이 명확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특히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는 이러한 일들의 재발을 막기 위한 중요한 요소일텐데 이러한 과정이 일괄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가해자도 또 다른 의미에서 보듬어줘야할 피해자인데 말입니다.

아무튼, 이 가이드북의 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네요.

특히 사랑의 열정 그 자체인 열림터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구요.

- 이런 기회와 인덕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

결국, 아이들을 만나는 심리치료사로서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큰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북을 읽으시는 모든 상담자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히 기법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상담자로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인식이나

마음의 자세에 대한 측면이 깊게 공유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 보이지 않는 인연을 맺을 모든 상담자, 파이팅입니다! ^^

이번 매뉴얼 제작은 2002년부터 지속되는 「성폭력피해자지원」이라는 내 활동에 대한 정리의 과정이기도 했다. 그간의 친족성폭력피해자 지원 경험을 점검하고 사례를 분석했다. 당장의 실무에 전념하다보면 쉽지 않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사례를 분석하고 지원방향을 논의하면서 잘 했던 점, 놓쳤던 점, 지원이 현재에까지 미치는 영향들을 돌아볼 수 있었다. 지원이 적시에 잘 들어 맞는 경우도 있었지만 법적인 한계, 기관의 사정, 담당자의 교체 등으로 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놓쳐진 부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검과 반성 속에서 본 매뉴얼을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절박한 마음이 들었다. 피해청소년이 피해를 말하고, 또 다시 말하는 과정에서 다시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원자인 내가, 우리가 더 영리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 또한 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 상담자, 활동가, 나름의 전문가들은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제대로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게 된다. 제도의 문제로 치부하여 활동의 깊이를 낮추고, 생각의 한계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좁혀나가면서 '전문화' 된다는 착각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말이다. 나는 다시 공부하고, 배워야겠다.

그리고 상담의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과 더 많은 관심을 나누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말이다.

나쁜년으로 성장하기

친족성폭력 피해로 <열림터>에 오는 친구들을 만나고 지원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은 '너 자신만을 생각해'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의심의 눈초리, 비난, 자책,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그 가운데 최초로 너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라는 말은 곧 '나쁜 년' 이 되어야 한다는 시작을 알리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아버지를 거스르고, 집안을 거스르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자신들에게도 그렇고, 그들과 만나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 자신에게도 혹은 이 친구들에게도 집으로 돌아가 계속 착한 딸 노릇을 하라고 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미 그 자리에서 멋지게 걸어 나온 것이고, 또 그만큼 성장하고 변화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착한 여자는 죽어서 천당에 가지만, 나쁜 여자는 살아서 어디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난데없는 착한여자 타령이지만, 저는 이들과 만나면서 이 말을 중얼거리곤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1. 서울 · 인천 지역 성폭력 상담소 (14개소)

(2007. 11. 28기준)

지역	구분	상담소	주 소	전화번호/팩스	소장명
서울	일반	(사)청소년을위한 내일여성센터부설 내일청소년(성폭력) 상담소	서대문구창천동 114-9번지 내일여성센터4층 nwcy@paran.com	(02) 338-7480 3141-9339	김영란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동작구 상도2동 361-26 w-peace98@hanmail.net	(02) 825-1272 825-1292	김미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시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 ksvrc@korea.com	(02) 338-2890 338-7122	이미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종로구 평동 동평빌딩 4층 fc@womenlink.or.kr	(02) 739-8858 739-8871	임재련
		한국여성상담센터 성폭력상담소	성북구 안암동 3가 86번지 신일빌딩 4층 ifkfcc@hitel.net	(02) 953-1704 953-2014	현혜순
		서초성폭력상담소	서초구 방배 4동 877-18 2층 chingu@chci.or.kr	(02) 3478-7647 599-7651	고영순
		중랑 성폭력상담소	중랑구 목 2동 237-47 4814 sms@hanmail.net	(02) 3482-7942	송미순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관악구 봉천6동 1679-25 2층 crisis119@hanmail.net	(02) 883-9285 883-9281	김현정
		서울여성의전화부설 서울성폭력상담센터	종구 신당1동 236-509 을지빌딩 5층 swline@kornet.net	(02) 2272-2161 2256-2190	문채수연
		벨엘케어상담소	금천구 시흥3동 940-4번지 동하빌딩 401호 bethelcare@hanmail.net	(02) 896-0408 0303-0313-3930	고명희
인천	일반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남동구 간석3동 34-4 isvrc@hanmail.net	(032) 424-3379 424-3369	이정원
		인천여성 성폭력상담소	남동구 구월1동 1239-17(1층) limju21@hanmail.net	(032) 468-0696 464-0696	성정희
		인천여협부설 성폭력상담소남구	주안1동 194-6 명품관3층	(032) 865-1365 865-8353	김신숙
		새인천성폭력상담소	남구 도화동 592-5 인천타워 18층 6호	(032) 228-1366 228-1367	조영만

2. 경기 지역 성폭력 상담소 (26개소)

지역	구분	상담소	주 소	전화번호/팩스	소장명
경기	일반	수원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42-120파워빌딩 7층 suwonhotline@hanmail.net	(031) 232-7780	이영희
		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7288-25번지 동호빌딩 6층 snwhl@naver.com	(031) 751-2050 751-2051	우승혜
		안양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559정화빌딩6층 awhl96@hanmail.net	(031) 442-5385	김현주
		평택성폭력상담소	평택시 평택동 66-10 ptsdvc@yahoo.co.kr	(031) 618-1366	김정숙
		안산 YWCA부설 여성과상담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2 하늘법조BD 308호 limju21@hanmail.net	(031) 413-9414	최승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평택·안성지부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시 이충동 591 counsel@lawhomep.or.kr	(031) 611-4251	최은숙
		안성성교육성폭력 상담센터	안성시 금산동 33-53호 mh3131@hanmail.net	(031) 676-1366 676-1367	진민현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군포시 산본동 1137-1대원프라자 302호 kpsangdam@hanmail.net	(031) 396-0236 396-0266	김인자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두천시 상패동 83-1 kdcsvc@hanmail.net	(031) 861-5555 867-3130	박성애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하남시 덕풍2동 346-4 서해상가4층 friends-1213@hanmail.net	(031) 796-1213 796-1274	이인숙
		부천 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시 원미구 중1동1144-4 현해탑프라자 302호 bwhotline@hanmail.net	(032) 328-9713 328-9712	김수정
		의왕 가정·성상담소	의왕시 오전동 373-5 452-1311@hanmail.net	(031) 452-1311	최영수
		포천가족· 성상담센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6리 106-5 pchsvc@hanmail.net	(031) 542-3171	이문환

지역	구분	상담소	주 소	전화번호/팩스	소장명
경기	일반	안산시민모임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시 분오3동1113-1 402호 sung7755@hanmail.net	(031) 419-1142	유해선
		파주상담센터 들	파주시 금촌동 770-9 womandd@hanmail.net	(031) 946-9091 948-9091	권오영
		고양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6-1 로데오 메탈릭타워 503-10호 goyang@womenlink.or.kr	(031) 919-1366 (031) 907-1003	안선희
		이천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이천 창전동 147-11 서영빌딩 5층 gss2000@kg21.net	(031) 638-7200 636-9500	권금자
		구리성폭력상담소	구리시 수택동 374-1(1층) gurilaw@hanmail.net	(031) 551-9976	정민영
		용인성폭력상담소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120번지 202호 ywcccc@hanmail.net	(031) 281-1366 282-4667	양해경
		동두천여성상담센터	동두천시생연2동 820-33(5/6) 3층 http://cafe.daum.net/ddcsvc http:// www.sexloge.co.kr	(031) 858-1366 868-1366	한완수
		남양주시 가족상담센터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371-2 화도복지관3층 chanseam2001@daum.net	(031) 595-1238	양정옥
		남양주YWCA 가정과 상담소	남양주시 금곡동 403-2번지 좋은인상프라자 512호 www.nyj1004.jasin.or.kr	(031) 558-1366 566-1366	천해리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광주시 송정동 130-14 순흥빌딩 3층 ssialwomen@hanmail.net	(031) 797-7031 797-7037	곽라분이
		연천성폭력상담소	연천군 청산면 초성3리245-2 ljsook724@hanmail.net	(031) 832-1317	이정숙
		태안성폭력상담소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431-9	(031) 239-7706	정인숙
양주성폭력상담소	양주시 덕정동 223-30 jubilee125@hanmail.net	(031) 864-7545 864-7546	홍혜숙		

3. 강원도 지역 성폭력상담소 (5개소)

지역	구분	상담소	주 소	전화번호/팩스	소장명
강원	일반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릉시 포남2동 1295 gangneung@lawhome.or.kr	(033) 652-9555 652-9950	윤은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동해시 천곡동 962-26번지 33/1반 2층 dsc4943@hanmail.net	(033) 535-4943 535-4944	조경진
		속초성폭력상담소	속초시 교동 949-1 womennara@hanmail.net	(033) 637-1988 637-1982	유혜정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원주시 단구동 618-11 16통3반 onju@lawhome.or.kr	(033) 765-1365 765-1367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춘천시 요선동 4-6번지(춘천YWCA건물 1층) chchlaw@hanmail.net	(033) 252-1366 252-1365	허애경

4. 대전·충청 지역 성폭력상담소 (12개소)

지역	구분	상담소	주 소	전화번호/팩스	소장명
충남	일반	충남성폭력상담소	천안시 영성동 9-13 2층 wvoice@chol.com	(041) 564-0026 564-0040	이화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천안시 천안시 원성동 441-3 청년회의소 1층 hotwhl@hanmail.net	(041) 561-0303 561-0324	이경옥
		조치원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22-6 jchwywca@hanmail.net	(041) 862-9191 863-0871	김희순
		홍성 성폭력상담소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437 help9949@hanmail.net	(041) 634-9949 634-9948	장기순
		태안참여자치 시민연대성폭력상담소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266-2(2층) happy2705@hanmail.net	(041) 675-2705 675-9740	유재연
충북	일반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411 cj3008@hanmail.net	(043) 268-3008 268-6714	김미경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22-15 2층 ch0968@hanmail.net	(043) 252-0968 255-0966	최영희
		제천성폭력상담소	제천시 명동 190-3번지 uhmoj@hanmail.net	(043) 652-0049 652-1365	이철순
		충주생명의전화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충주시 성내동 232-1 clifeine@hamail.net	(043) 845-1366 842-9191	이정숙
대전	일반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9-9 sd3999@hanmail.net	(042) 526-3999 532-1276	이현숙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45-1 ywca3038@hanmail.net	(042) 254-3038 721-3038	권부남
		대전열린성폭력상담소	대전시 동구 성남2동 10-17 openwindows@empal.com	(042) 637-1366 638-1366	황영희

5. 전남북·광주·제주 지역 성폭력상담소 (18개소)

지역	구분	상담소	주 소	전화번호/팩스	소장명
전남	일반	목포여성상담센터	목포시 옥암동 995-2 승훈빌딩 2층 mwomen99@hanmail.net	(061) 283-4552 285-1366	문옥희
		전남성폭력상담소	순천시 금곡동 167-4 scwhl@hanmail.net	(061) 755-8033 751-0366	박옥임
		여수성폭력상담소	여수시 교동 611-6 happyi4003@hanmail.net	(061) 666-4001 666-4003	강정희
		무안여성상담센터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217-1 muan8823@hanmail.net	(061) 454-1360 454-8823	송옥주
		완도성폭력상담소	완도군완도읍군내리1154번지 현대A상가빌딩203호204호 wando1366@hanmail.net	(061) 552-1366 555-1105	천해숙
전북	일반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589-2 전북노회회관 3층 589-2 svpcc@hanmail.net	(063) 236-0151 236-0153	황지영
		전주여성인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전주시 완산구 전동58-9 남경한의원2층 jjwhl 21@hanmail.net	(063) 287-7325 286-7324	고미라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시 월명동 18-14 gsung1366@hanmail.net	(063) 442-1570 445-1366	최용희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시 영등동856-1(YMCA8층) iksung3999@hanmail.net	(063) 834-1366 834-6112	도성희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정읍시 수성동 609-1모아BD 4층 oksook1954@hanmail.net	(063) 537-1366 533-1368	최옥숙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성폭력상담김제시 신흥동 487-30 sung1366@naver.com	(063) 546-1366 546-8367	김철동
		남원YWCA 성폭력상담소	남원시 하정동 185-1 nmwnywca@hitel.net	(063) 625-1316 633-7002	이 속
광주	일반	광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북구 북동 236-2 북동신흥 2층 sangdam0410@hanmail.net	(062) 521-1360 529-0384	나인형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	남구 주월동 1201-8 click4050@hanmail.net	(062) 671-4050 653-4437	임지영
		광주여성인전화부설 성폭력상담	소서구 화정동 134-8 kjwhL@hanmail.net	(062) 363-0487 363-0486	채숙희
		광주YWCA 성폭력상담소	남구 양림동 108-5 gjywcascf@hanmail.net	(062) 652-2431 672-1356	양정숙
제주	일반	제주YWCA부설 여성의피난처	제주시 연동300-2 namdoo01@hanmail.net	(064) 746-7993 749-7993	강미라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시 일도 2동 367-7번지 3층 novawij@hanmail.net	(064) 756-4008 752-8297	고명희

6. 대구·경북 지역 성폭력상담소 (12개소)

지역	구분	상담소	주 소	전화번호/팩스	소장명
대구	일반	(사단법인)대구여성의 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남구 봉덕3동 650-8 3층 esco10@hananet.net	(053) 471-6484 471-6481	윤은희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서구 평리4동 1368-1 www.mentor7979.kr mentor7979@hanmail.net	(053) 566-1900 568-7942 fax) 566-1905	김지향
		한국결혼가족복지회부설 라포르성폭력상담소	동구 신암동 806-3 7142rapport@hanmail.net	(053) 959-6008	홍순옥
		대구 여성폭력통합상담소	수성구 범어 2동 51-14 금강빌딩2층 lawdaegu@hanmail.net	(053) 745-4501	김영자
경북	일반	경북 여성통합상담소	포항시 남구 송도동501-22 phwomen@hanail.net	(054) 275-7436 282-1798	강은희
		구미 여성종합상담소	구미시 사곡동 486-9 gumi1388@hanmail.net	(054) 463-1386 1387,1388	우순남
		필그림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상주시 화서면 상곡2리 226 pilgrimhouse@or.kr	(054) 534-5750	조재학
		문경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문경시 모전동 74-4 c5523358@hanmail.net	(054) 555-8207 555-4418	채병렬
		칠곡 종합상담센터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571-1 wevmaster@yourzone.orc	(054) 973-8291	김미화
		사단법인 한마음통합상담소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6-34 im5930@hanmail.net	(054) 278-4330	홍종락
		경산 성폭력상담소	경산시 삼북동 275-14	(053) 814-1318 814-1391	김주하
		경주 성폭력상담소	경주시 성건동 369-44 huia249@hanmail.net	054) 777-1366 745-0365	김순희

7. 부산·울산·경남 지역 성폭력상담소 (18개소)

지역	구분	상담소	주 소	전화번호/팩스	소장명
경남	일반	경남여성회 부설 성가족상담소	마산시오동동17-135가고파오피스텔504호 sangdamso8400@hanmail.net	(055) 244-8400 244-2753	신강숙
		진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진주시 평거동 203-9번지 재건빌딩 3층 femisangdam@hanmail.net	(055) 746-7462 746-9771	박현자
		김해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시 봉황동 17-6 khwine@hanmail.net	(055) 329-6451 329-6452	권경희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진해시 풍호동 750-19, 2층 jhwhl01@hanmail.net	(055) 546-8322	정인선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남 창원시 신월동 68-1 토월복합상가725호 chwhl@hanmail.net	(055) 283-8322 282-8322	유인숙
		밀양성폭력상담소	밀양시 내이동 1227 한마음타운 상가 301호 yasi1367@hanmail.net	(055) 352-1368 352-1365	박영진
		사천 성폭력상담소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117(3층) gender0416@hanmail.net	(055) 852-9040 852-9041	김성숙
		양산 성가족상담소	양산시 북부동 533번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내 155호 yangsan0707@hanmail.net	(055) 366-6663 366-6676	김수경
		거제성폭력상담소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136-2 next4216@hanmail.net	(055) 633-7637	손영순
		거창성·가족 상담소	경남 거창군 거창15읍 송정리 700 한국폴리텍7거창대학 도서관건물 207호 0559441828@hanmail.net	(055) 944-1829	최윤정
하동성폭력상담소	경남하동군하동읍 읍내리 320-1 khs5893@hanmail.net	(055) 883-9176 883-8629	김희순		
부산	일반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653-14 pwhl4344@hanmail.net	(051) 817-4344	허지영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시 동래구 명륜1동 533-230 울곡빌딩1006호 woman-world@hanmail.net	(051) 558-8833 558-3932	이재희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69-3 p051@chol.com	(051) 624-5584 624-5580	김명희
		사하성폭력상담소	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 1159-4 yousunj@hanmail.net	(051) 203-1592 203-1560	전유선
울산	일반	울산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성폭력상담소울산시 중구 성남동 57-17 homee39@hanmail.net	(052) 244-1366 246-1367	성주향
		생명의전화울산지부 성폭력상담소	울산시 남구 옥동 591-1 uslifeline91@korea.com	(052) 267-1366 265-5560	문영란
		밝은미래복지재단 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시 남구 신정3동 508-12(3층) usrodem2005@korea.com	(052) 257-1375 257-1376	김부

8.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14개소)

지역	상담소명	소장명	전화번호/팩스	주 소
서울	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민병윤	(02) 3675-4465, 6 3675-4467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808호 (110-736) ss4466@hanmail.net cafe.daum.net/ss4465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배복주	(02) 3013-1399 441-2328	강동구 명일1동47-1 세종프라자 606호 (134-825) was1366@hanmail.net
경기	강원사회복지회여성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영애	(031) 755-2526, 7 758-4724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06번지 우일프라자 502 withus3663@hanmail.net
충남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전희재	(041) 541-1514, 5 546-1514	충남 아산시 온천2동 129-17번지 heejae5@hanmail.net
충북	청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하숙자	(043) 224-9414, 5 224-3806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4-3(360-050) hotsisters@hanmail.net
전북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부설장애인 성폭력상담소	한은경	(063) 242-8275 246-2003	전주시 덕진구 인후2가 1555-4(561-832) ppfky@hanmail.net
광주	광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오명란	(062) 654- 1366 676-2411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49-2 (503-030) 1366kjbow@hanmail.net
제주	제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김경미	(064) 753-4980	제주시 이도 1동 1254-18번지 buribilkim@hanmail.net
대구	대구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권순기	(053) 637-6057 637-6053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 23-3(704-310) tdaws@hanmail.net
경남	사계절장애인 성문화상담소	임경숙	(055) 635-4433 636-5749	거제시 옥포2동 509-6 미진뉴골드 상가 1층 3호 0173169191@hanmail.net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마산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정분시	(055) 241-5041 241-5043	마산시오동동 17-135 가고파오피스텔509호(631-859) 5041sos@hanmail.net
부산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성폭력상담소	장명숙	(051) 583-7735 583-1996	금정구 장전1동 204-4 myungsook20@hanmail.net
울산	울산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	홍정련	(052) 246-1368 903-4211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373-5 kis200k@hanmail.net
목포	목포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서미화	(061) 284-4767 283-3767	전남 목포시 용해동 209-1(2층) younsl4767@hanmail.net

9. 아동성폭력전담센터 (3개소)

상담소명	소장명	전화번호/팩스	주 소
해바라기 아동센터	최경숙	(02) 3274-1375 3274-1377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63-14 구프라자 7층
영남해바라기 아동센터	심보영	(053) 421-1375 421-1370	대구시 중구 삼덕동 2가 271번지 소석문화센터 10층 http://www.csart.or.kr ysf1375@hanmail.net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신기숙	(062) 232-1375 232-1376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 112-1번지 웰클리닉 4층 sunflower1375@hanmail.net http : www.forchild.or.kr

10.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현황 (15개소)

* 장애여성 보호시설 ** 중장기 자립공동체시설
(보호시설의 특성상 장소의 보호를 위해 자세한 주소는 생략함)

지역	시설명	시설장	신고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팩스	e-mail
서울	열림터	정정희	95.1.23	서울 마포구 합정동	(02) 338-3562 339-7122	yolim@sisters.or.kr
	(가) 가 헬렌의집*	유보순	02. 10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02) 830-8807 830-1544	fmmhelen@yahoo.co.kr
부산	제2여성의집	정미자	97.9.30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051) 545-9274 545-9700	womennet@hanmail.net
	양지터	김은희	00.11.27	부산 연제구 연산동	(051) 804-4339 868-4328	syjt1424@hanmail.net
	부산여성사랑의집*	최경숙	01.12.11	부산 금정구 장전동	(051) 515-1781 583-1996	pdaws98@hanmail.net
경기	수원시 여성의 쉼터	이연숙	98.9.15	수원시 팔달구	(031) 243-4600 248-4999	suwonlaw@hanmail.net
	의정부시사랑의쉼터	김영란	04. 4	경기도 의정부시	(031) 877-6269 846-6657	bestfriend21@hanmail.net
	하남	박주경		파주시 동패리	(031) 941-9606	goyang@womenlink.or.kr
전북	디딤터	김정수	98.11.25	전주시 완산구 서산동	(063) 277-9557 277-9558	svpcc@hanmail.net
	은혜의 쉼터	김선자	02.8.31	군산시 미원동	(063) 445-4126 442-4126	en4126@hanmail.net
제주	제주 YWCA 여성의쉼터	임애경	02.9.26	제주시 연동	(064) 746-7993 749-7993	ok7843@hanmail.net
전남	광주전남여성민우회 다솜누리	김춘희	04.2.24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062) 462-1366 462-1368	shim1366@hanmail.net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성폭력보호시설 '셋터'	박영희	05.8.1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062) 364-1366 365-1366	kg1366@hanmail.net
강원	베다니 쉼터	손숙자	04.5.18	원주시 행구동	(033) 746-1366 748-1366	ssj4083@hanmail.net
울산	밝은미래복지재단 부설 징검다리	김옥수	05.7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052) 244-1375 244-1379	usrodem2005@korea.com

전국 ONE-STOP센터 연락망

2007. 7. 20 현재

지역(평수)	병원(개소)	전화번호	팩 스
서울 (38)	경찰병원 (2005. 8.31)	(02) 3400-1117 3400-1700	(02) 3400-1694
부산 (31)	부산의료원 (2005.12.22)	(051) 607-2017	(051) 607-2665
대구 (52)	대구의료원 (2006. 5. 9)	(053) 556-8117 556-9117	(053) 556-9117
인천 (20)	인천의료원 (2006. 3. 31)	(032) 582-1170 528-1171	(032) 582-1179
울산 (24)	동강병원 (2006. 1.25)	(052) 246-3117 244-3117	(052) 244-6117
경기 (25)	아주대병원 (2006.11.10)	(031) 216-1117	(031) 216-1109
경기북부(45)	의정부의료원 (2007.9.18)	(031) 874-3117 874-5117	(031) 872-4117
강원 (23)	강원대병원 (2006. 2. 2)	(033) 243-8117 244-8117	
충북 (24)	청주의료원 (2006. 2. 8)	(043) 272-7117 274-7117	(043) 268-7117
대전충남 (42)	충남대병원 (2006. 9. 7)	(042) 280-8436, 7	(042) 280-8434
전북 (20)	전북대병원 (2006. 2.28)	(063) 278-0117 273-2117	(063) 273-2117
광주전남 (40)	조선대병원 (2006. 9. 4)	(062) 225-3117 232-3117	
경북 (28)	안동의료원 (2006. 1.12)	(054) 843-1117 843-2117	(054) 851-5472
경남 (36)	마산의료원 (2006.12. 1)	(055) 244-8117 245-8117	
제주 (26)	한라병원 (2006.12. 8)	(064) 749-5117	(064) 749-6117

학교장 추천서

학생명 : 000 [학년 반]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학생은 ~~~~

2007. 월 일

작성자 : 담임교사 000 날인 (서명)

000고등학교장 (직인)

